

2016.11.22

제 9 호

# KLSI

## ISSUE PAPER

[www.klsi.org](http://www.klsi.org)

###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16.8)결과—

김유선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  
노동시장연구센터 소장

#### [목차]

I. 비정규직 규모

II. 비정규직 임금·노동시간·노동복지 등

[보론] 비정규직 규모 추정 방식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50(충정로3가, 골든브릿지빌딩) 3층

전화 02) 393-1457

팩스 02) 393-4449

[WWW.facebook.com/ksiedit](http://WWW.facebook.com/ksiedit)

**<요약>**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16년 8월)를 분석한 결과 발견된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비정규직 수는 2015년 8월 868만 명에서 2016년 8월 874만 명으로 6만 명 증가했고, 비정규직 비율은 45.0%에서 44.5%로 0.5%p 감소했다. 그러나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정규직,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자영업자로 잘못 분류되고 있어, 실제 비정규직 비율은 50%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둘째, 세부 고용형태별로 기간제는 286만 명(14.8%)에서 293만 명(14.9%)으로 7만 명(0.1%p) 증가했고, 시간제는 224만 명(11.6%)에서 248만 명(12.7%)으로 25만 명(1.1%p) 증가했으며, 파견용역근로는 87만 명(4.5%)에서 90만 명(4.6%)으로 3만 명(0.1%p) 증가했다.

셋째, 정규직 임금은 2015년 8월 297만 원에서 2016년 8월 306만 원으로 9만 원(3.1%) 인상되고, 비정규직 임금은 148만 원에서 151만 원으로 3만 원(1.9%) 인상되었다. 그 결과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은 49.8%에서 49.2%로 0.6%p 확대되었다.

넷째, 남자 정규직 임금을 100이라 할 때 여자 정규직은 69.4%, 남자 비정규직은 53.1%, 여자 비정규직은 35.8%로 격차가 매우 크다. 남녀 차별보다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이 더 심하고, 성별 고용형태별 차별이 비정규직 여성에 집중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섯째, 저임금계층은 23.9%로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많고, 임금불평등(상위10%와 하위10% 임금격차, P9010)은 2014년 8월 5.00배, 2015년 8월 5.25배, 2016년 5.63배로 가파르게 증가해 OECD 국가 중 가장 불평등이 심한 나라가 되었다.

여섯째, 법정 최저임금 수혜자(영향률)는 182만 명(9.4%)에서 184만 명(9.4%)으로 2만 명(0.0%p) 증가했고, 법정 최저임금 미달자(미달률)는 222만 명(11.5%)에서 266만 명(13.6%)으로 44만 명(2.1%p) 증가했다. 정부 부문인 공공행정에서 최저임금 미달자가 13만 명(12.6%)이나 되는 것은 정부가 선량한 사용자로서 민간에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사실조차 망각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일곱째, 시급제 노동자 가운데 법정 최저임금 미달자는 7만 명(5.2%)이고, 최저임금 받는 사람은 56만 명(40.2%)이며, 최저임금보다는 많지만 시급 7천 원 이하가 44만 명(31.8%)이다. 이상은 최저임금이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결정에 매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말해준다.

여덟째, 한국은 OECD 국가 중 고용이 가장 불안정한, 초단기근속의 나라다. 근속년수 평균값은 5.8년이고 중위값은 2.4년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짧다. 단기근속자(근속년수 1년 미만)는 32.5%로 가장 많고, 장기근속자(근속년수 10년 이상)는 21.0%로 가장 적다.

아홉째, 정규직은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률과 퇴직금·상여금 적용률이 96~100%인데, 비정규직은 32~40%로 정체 상태에 빠져 있다. 이는 비정규직 대다수가 임시근로를 겸하고 있어, 사업체 소속 상용직을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사회보험제도와 근로기준법 체계로는 근본적 제약이 따르기 때문이다.

열째, 노조 조합원 수(조직률)는 2015년 8월 238만 명(12.3%)에서 2016년 8월 234만 명(11.9%)으로 4만 명(-0.4%p) 감소했다. 정규직은 219만 명(20.6%)에서 218만 명(20.0%)으로 1만 명(-0.6%p) 감소했고, 비정규직은 19만 명(2.2%)에서 16만 명(1.8%)으로 3만 명(-0.4%p) 감소했다.

#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김유선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  
노동시장연구센터 소장

## I. 비정규직 규모

### 1. 전체

통계청이 2016년 8월에 실시한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에서 비정규직은 874만 명(임금노동자의 44.5%)이고 정규직은 1,089만 명(55.5%)으로, 노동자 절반이 정규직이고 나머지 절반이 비정규직이다. OECD 국가들은 시간제근로가 비정규직의 다수를 점하지만, 우리나라는 기간제근로가 14.9%로 가장 많다. 하지만 시간제근로(파트타임)도 꾸준히 늘어 12.7%에 이르고 있다. 게다가 비정규직의 96.2%(874만 명 가운데 841만 명)가 임시근로자거나 임시근로를 겸하고 있어, 다른 나라에 비해 고용이 매우 불안정한 특징을 보이고 있다([표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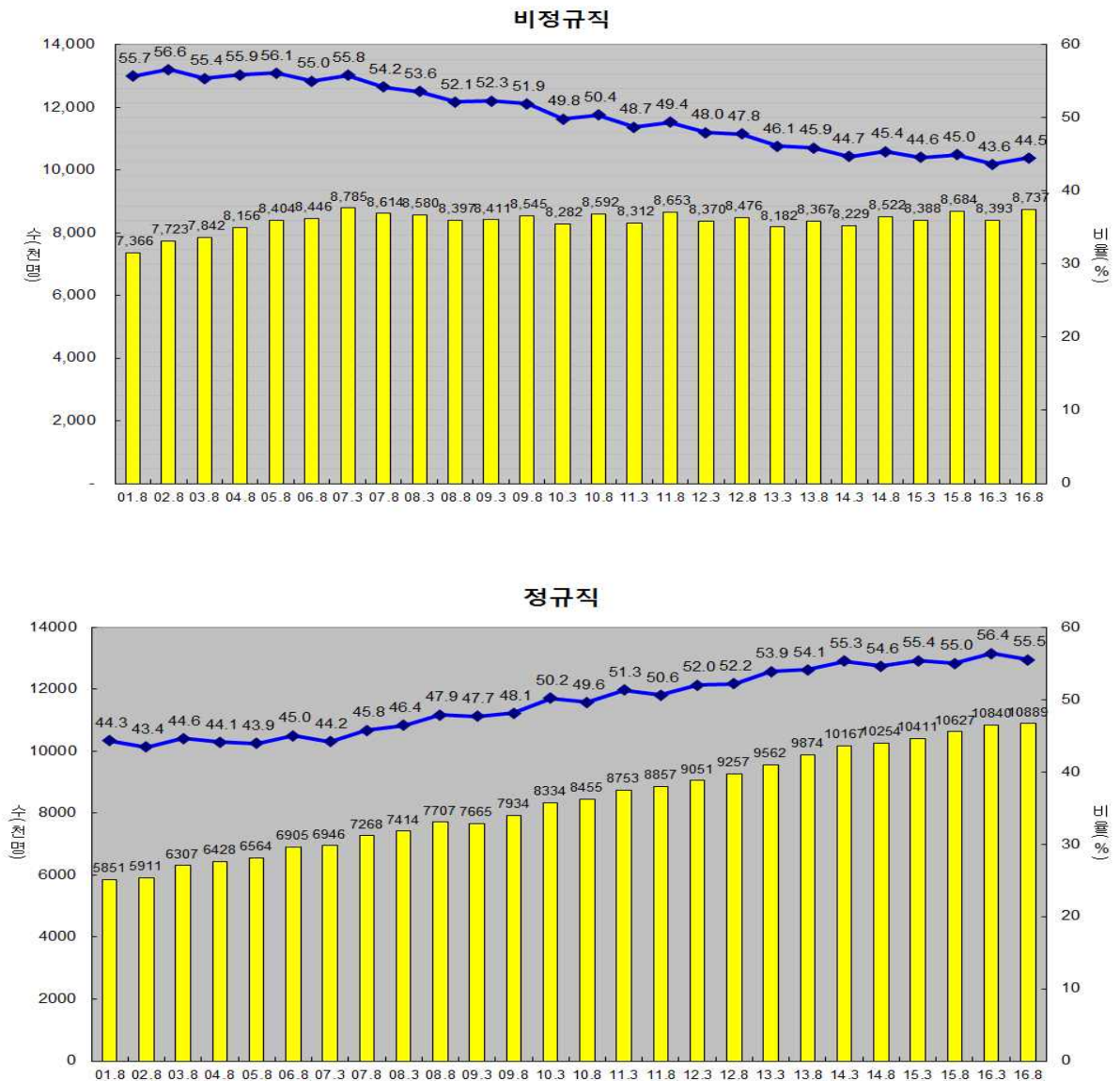
[표1] 비정규직 규모 (2016년 8월)

	수(천 명)				비율(%)				
	상용	임시	일용	전체	상용	임시	일용	전체	
임금노동자(1)	12,966	5,196	1,464	19,626	66.1	26.5	7.5	100.0	
정규직 (2=1-3)	10,889			10,889	55.5			55.5	
<b>비정규직 (3=①+--+⑧, 중복제외)</b>	<b>2,077</b>	<b>5,196</b>	<b>1,464</b>	<b>8,737</b>	<b>10.6</b>	<b>26.5</b>	<b>7.5</b>	<b>44.5</b>	
고용계약	임시근로	1,745	5,196	1,464	8,405	8.9	26.5	7.5	42.8
	장기임시근로 ①		3,613	1,141	4,754		18.4	5.8	24.2
	한시근로 ②	1,745	1,583	323	3,651	8.9	8.1	1.6	18.6
	(기간제)	1,653	1,083	193	2,929	8.4	5.5	1.0	14.9
근로시간	시간제근로 ③	270	1,660	553	2,483	1.4	8.5	2.8	12.7
	호출근로 ④			863	863			4.4	4.4
근로제공 방식	특수고용 ⑤	2	471	22	495	0.0	2.4	0.1	2.5
	파견용역 (파견) ⑥	561	265	72	898	2.9	1.4	0.4	4.6
	(용역) ⑦	126	66	9	201	0.6	0.3	0.0	1.0
	(용역) ⑦	435	198	63	696	2.2	1.0	0.3	3.5
	가내근로 ⑧	3	16	22	41	0.0	0.1	0.1	0.2

비정규직 규모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1년 8월(737만 명)부터 2007년 3월(879만 명)까지 꾸준히 증가하다가 2007년 8월부터 감소세로 돌아서 2013년 8월에는 818만 명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2014년부터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 2016년 8월에는 874만 명으로 증가했다. 비정규직 비율은 2001년 8월부터 2007년 3월까지 55~56% 수준을 유지하다가 2007년 8월(54.2%)부터 2014년 3월(44.7%)까지 감소했다. 그러나 2014년 3월 이후는 거의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정규직은 2001년 8월(585만 명)부터 2016년 8월(1,089만 명)까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정규직 비율은 2001년 8월(44.3%)부터 2007년 3월(44.2%)까지 44% 수준을 유지하다가 2007년 8월(45.8%)부터 2014년 3월(55.3%)까지 꾸준히 증가했다. 그러나 2014년 3월 이후는 55~56%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그림1]과 [표2] 참조).

[그림1] 비정규직과 정규직 규모 추이



[표2] 연도별 비정규직 규모

	수(천 명)							비율(%)							
	13년 8월	14년 3월	14년 8월	15년 3월	15년 8월	16년 3월	16년 8월	13년 8월	14년 3월	14년 8월	15년 3월	15년 8월	16년 3월	16년 8월	
임금노동자	18,241	18,396	18,776	18,799	19,311	19,233	19,626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정규직	9,874	10,167	10,254	10,411	10,627	10,840	10,889	54.1	55.3	54.6	55.4	55.0	56.4	55.5	
<b>비정규직</b>	<b>8,367</b>	<b>8,229</b>	<b>8,522</b>	<b>8,388</b>	<b>8,684</b>	<b>8,393</b>	<b>8,737</b>	<b>45.9</b>	<b>44.7</b>	<b>45.4</b>	<b>44.6</b>	<b>45.0</b>	<b>43.6</b>	<b>44.5</b>	
임시근로	8,077	7,949	8,225	8,071	8,382	8,065	8,405	44.3	43.2	43.8	42.9	43.4	41.9	42.8	
장기임시근로	4,579	4,704	4,817	4,738	4,712	4,544	4,754	25.1	25.6	25.7	25.2	24.4	23.6	24.2	
한시근로	3,498	3,246	3,408	3,334	3,671	3,521	3,651	19.2	17.6	18.2	17.7	19.0	18.3	18.6	
(기간제)	2,761	2,588	2,749	2,626	2,859	2,811	2,929	15.1	14.1	14.6	14.0	14.8	14.6	14.9	
시간제근로	1,884	1,916	2,032	2,091	2,236	2,222	2,483	10.3	10.4	10.8	11.1	11.6	11.6	12.7	
호출근로	821	788	805	830	876	757	863	4.5	4.3	4.3	4.4	4.5	3.9	4.4	
특수고용	545	551	524	501	494	502	495	3.0	3.0	2.8	2.7	2.6	2.6	2.5	
파견용역	850	801	799	847	866	911	898	4.7	4.4	4.3	4.5	4.5	4.7	4.6	
(파견)	204	167	195	191	210	216	201	1.1	0.9	1.0	1.0	1.1	1.1	1.0	
(용역)	646	634	604	658	656	693	696	3.5	3.4	3.2	3.5	3.4	3.6	3.5	
가내근로	73	77	58	46	55	44	41	0.4	0.4	0.3	0.2	0.3	0.2	0.2	

[참고] 비정규직 추계 방식

2016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를 분석한 이 글에서 비정규직 규모는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⑧(중복 제외)’로 계산했고, 정규직 규모는 ‘임금노동자 - 비정규직’으로 계산했다([표1] 참조). 각각의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장기임시근로: 종사상 지위가 임시·일용직인 자 - 한시근로

☞ 이 글에서 장기임시근로는 고용계약을 맺지 않고 장기간 임시직으로 사용하는 장기임시근로자(permanent temporary worker, long-term temps, permatemps) 이외에, 업체 비소속 자유노동자(casual worker), 계절근로자(seasonal worker)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한다.

② 한시근로: 고용될 때 근로기간을 정한 기간제근로자(문항 22번 응답 1) + 고용될 때 근로기간을 정하지 않은 자로서 현 직장에 계속 고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자(문항 22번 응답 2 & 문항 53번 응답 2)

③ 시간제근로: 문항 54번 응답 2

④ 호출근로: 문항 52번 응답 1

⑤ 특수고용: 문항 57번 응답 1

⑥ 파견근로: 문항 55번 응답 2

⑦ 용역근로: 문항 55번 응답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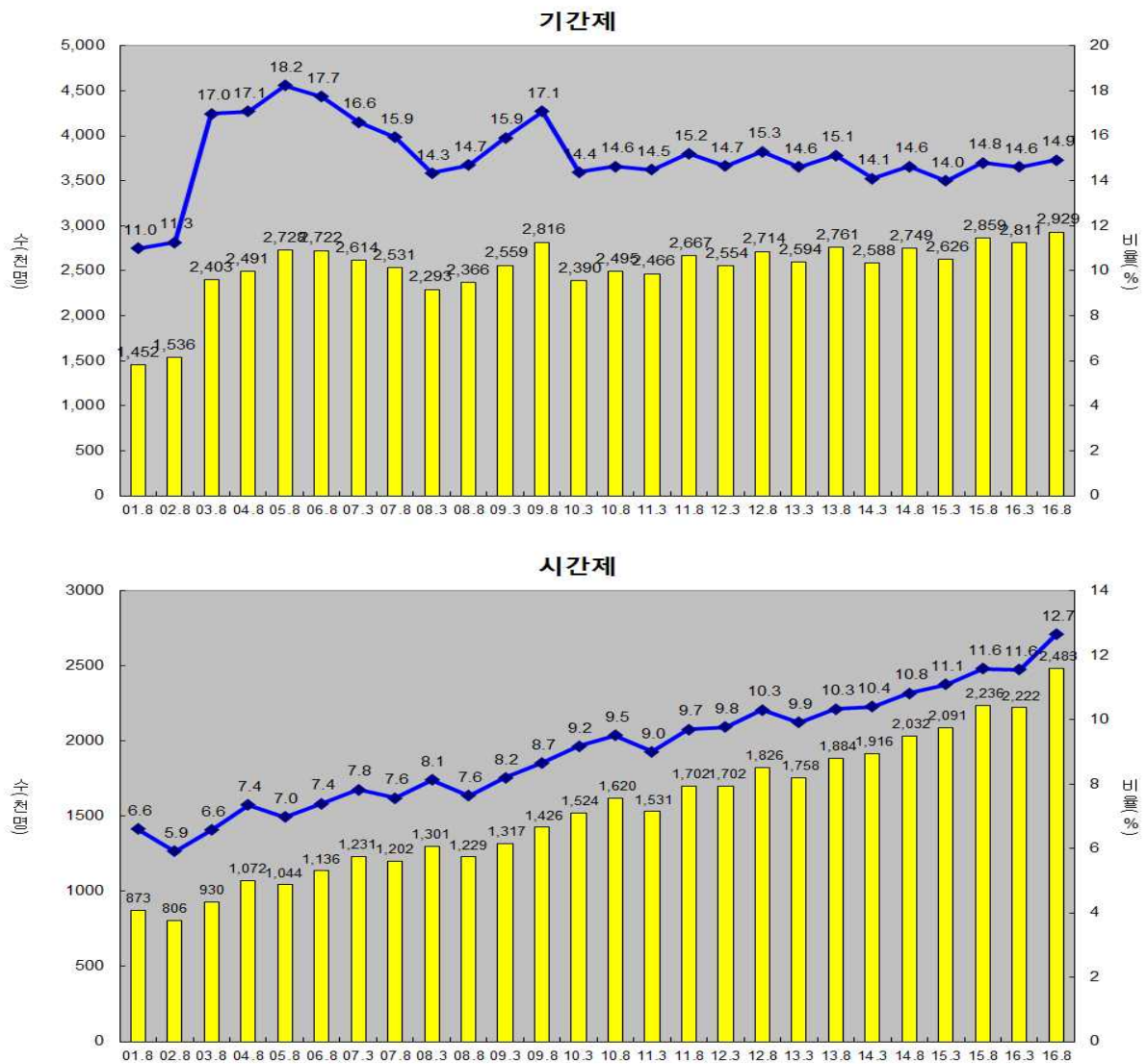
☞ 설문조사에서 임금을 파견업체에서 받았다고 응답하면 파견근로, 용역업체에서 받았다고 응답하면 용역근로로 분류될 뿐, 파견근로와 용역근로를 구분해야 할 근거가 없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파견근로와 용역근로를 합친 파견용역근로 분석결과도 함께 제시한다.

⑧ 가내근로: 문항 58번 응답 1

## 2. 세부 고용형태

세부 고용형태 추이를 살펴보면, 기간제 근로는 2005년 8월 273만 명(18.2%)을 정점으로 기간제보호법에 힘입어 2008년 3월 229만 명(14.3%)으로 감소했다. 2009년 8월에 282만 명(17.1%)으로 늘어난 것은 희망근로 때문이며, 2010년 3월 239만 명(14.4%)에서 2016년 8월 293만 명(14.9%)으로 14~15%대에서 고착화되고 있다. 시간제 근로는 2002년 8월 81만 명(5.9%)에서 2016년 8월 248만 명(12.7%)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그림2]와 [표2]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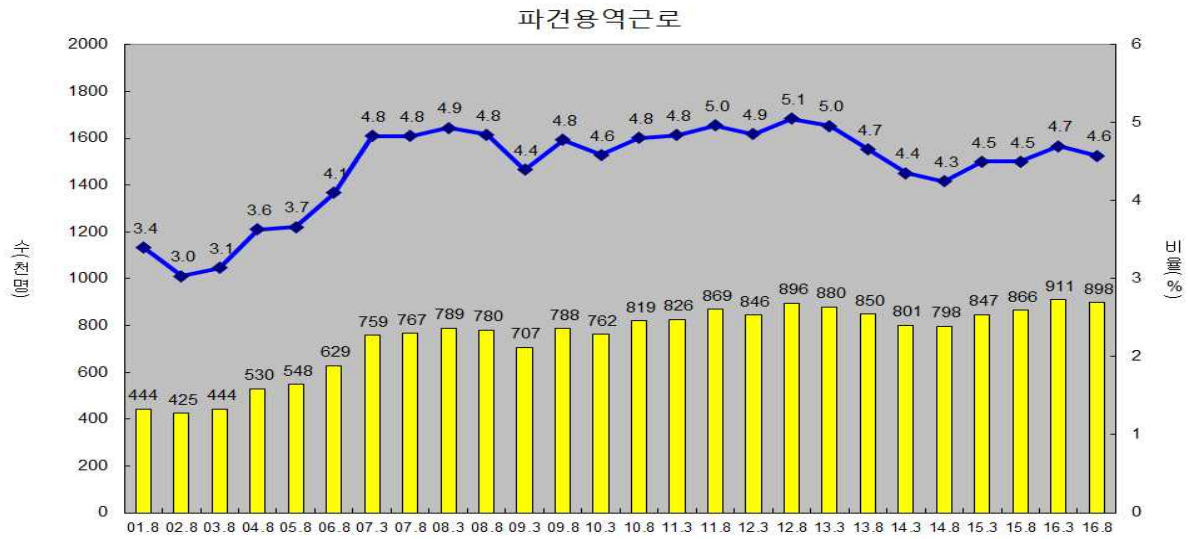
[그림2] 기간제와 시간제 근로 추이



파견근로와 용역근로를 합친 파견용역근로를 살펴보면, 2002년 8월 43만 명(3.0%)에서 2007년 3월 76만 명(4.8%)까지 빠른 속도로 증가했고, 2007~2012년에는 같은 수준을 유지하거나 매우 완만하게 증가하다가 2012년 8월 90만 명(5.1%)을 정점으로 감소세로 돌아섰다. 그러나 2014년 8월 80만 명(4.3%)을 저점으로 2016년 8월에는 90만 명(4.6%)으로 증가했다([그림3]과 [표2]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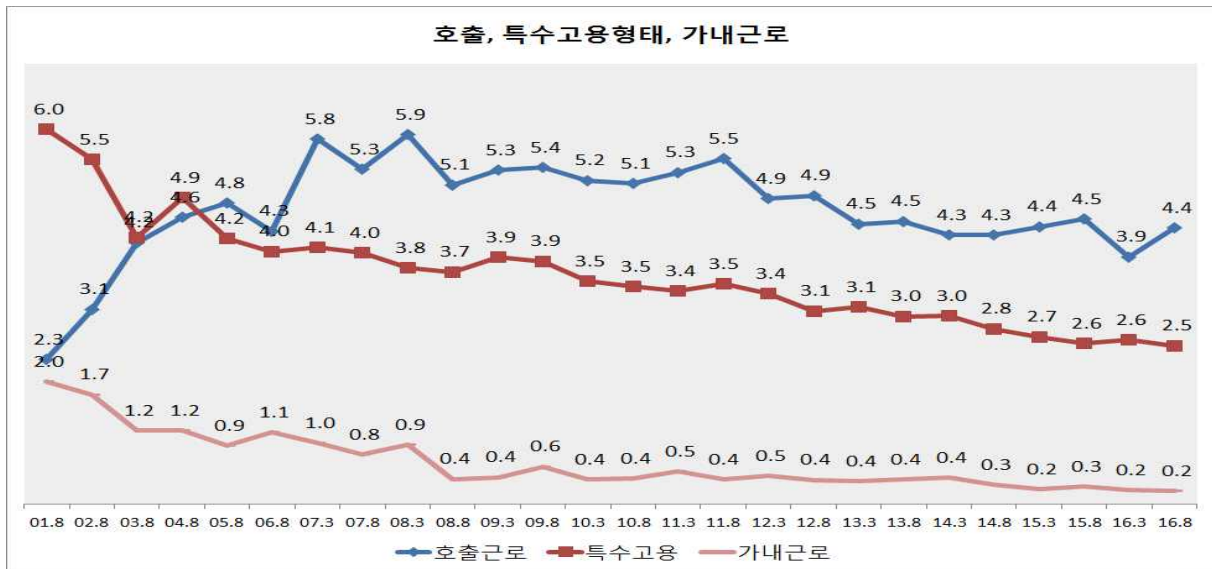


[그림3] 파견용역근로



호출근로는 2011년 8월 96만 명(5.5%)을 정점으로 2016년 8월에는 86만 명(4.4%)으로 감소했다. 특수고용은 2001년 8월 79만 명(6.0%)에서 2016년 8월 50만 명(2.5%)으로 감소했고, 가내근로도 같은 시기 26만 명(2.0%)에서 4만 명(0.2%)으로 감소했다. 특수고용 노동자가 노동계나 정부 추산보다 크게 적을 뿐 아니라 노조 조합원이 한 명도 없는 것은, 상당수가 자영업자로 잘못 분류되고 있기 때문이다([그림4]와 [표2] 참조).

[그림4] 호출, 특수고용, 가내근로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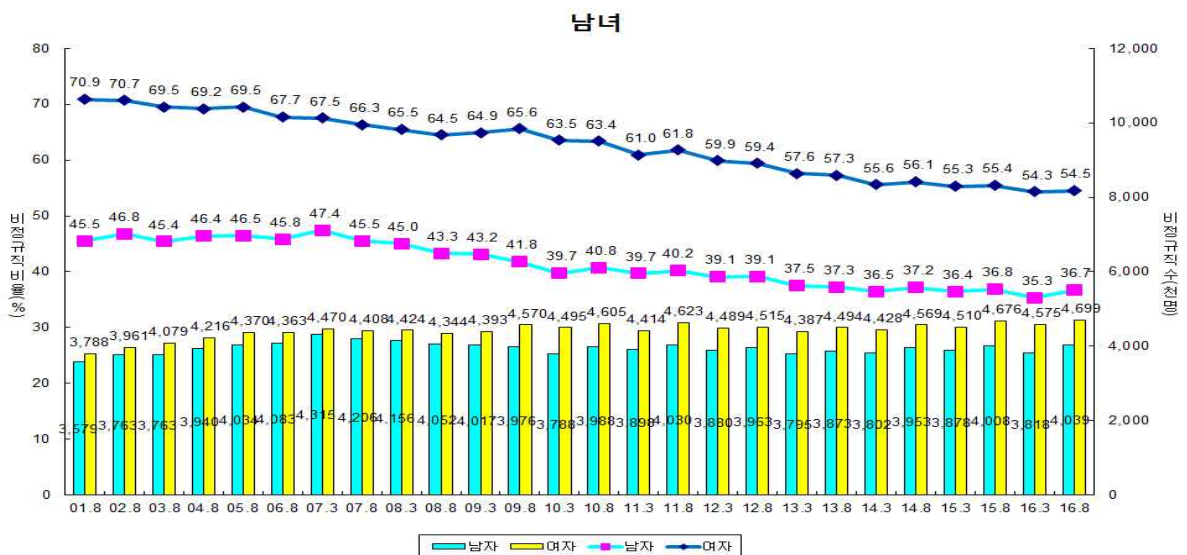
### 3. 남녀

남자는 정규직이 697만 명(63.3%), 비정규직이 404만 명(36.7%)으로 정규직이 많다. 여자는 정규직이 392만 명(45.5%), 비정규직이 470만 명(54.5%)으로 비정규직이 많다. 여자는 비정규직 비율이 2001년 8월(70.9%)부터 2016년 8월(54.5%)까지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남자도 2007년 3월(47.4%)을 정점으로 2016년 8월(36.7%)까지 감소하고 있다. 2007년 3월에는 여성 비정규직이 남성 비정규직보다 15만 명 많았지만, 2016년 8월에는 66만 명으로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표 3]과 [그림5] 참조).

[표3] 남녀별 비정규직 규모 (2016년 8월)

		수(천 명)		비중(%)		분포(%)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임금노동자		11,009	8,618	100.0	100.0	56.1	43.9
정규직		6,970	3,919	63.3	45.5	64.0	36.0
비정규직		4,039	4,699	36.7	54.5	46.2	53.8
고용계약	임시근로	3,917	4,488	35.6	52.1	46.6	53.4
	장기임시근로	2,201	2,554	20.0	29.6	46.3	53.7
	한시근로	1,717	1,934	15.6	22.4	47.0	53.0
	(기간제)	1,369	1,561	12.4	18.1	46.7	53.3
근로시간	시간제근로	711	1,772	6.5	20.6	28.6	71.4
	호출근로	605	258	5.5	3.0	70.1	29.9
방식	특수고용	152	342	1.4	4.0	30.8	69.2
	파견용역	457	440	4.2	5.1	50.9	49.1
	(파견)	101	99	0.9	1.1	50.5	49.5
	(용역)	355	341	3.2	4.0	51.0	49.0
	가내근로	2	40	0.0	0.5	4.8	95.2

[그림5] 남녀별 비정규직 규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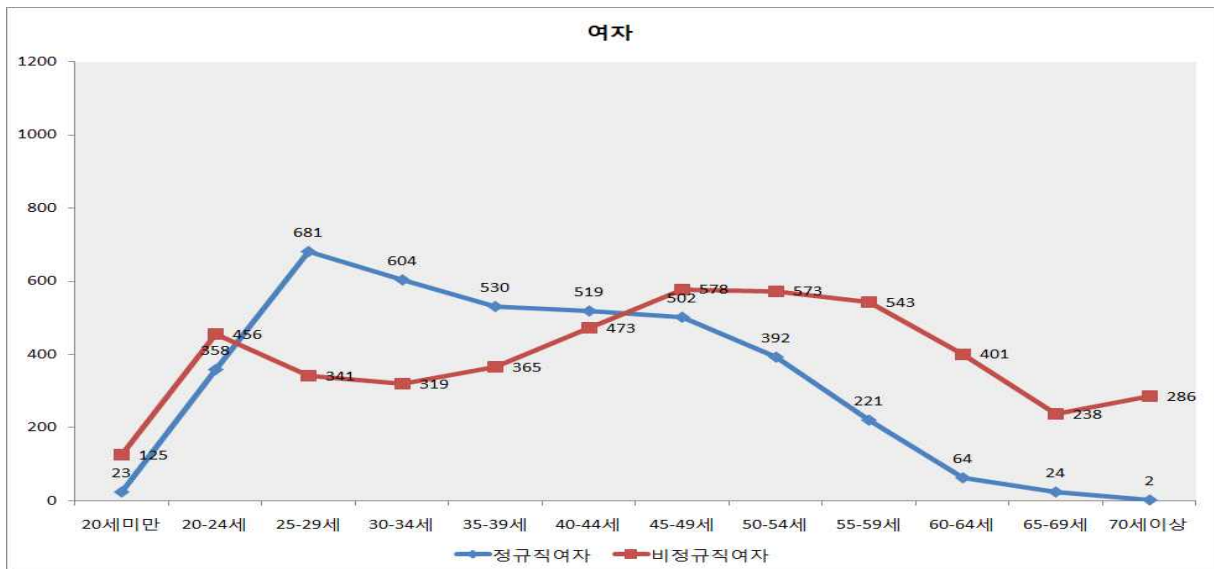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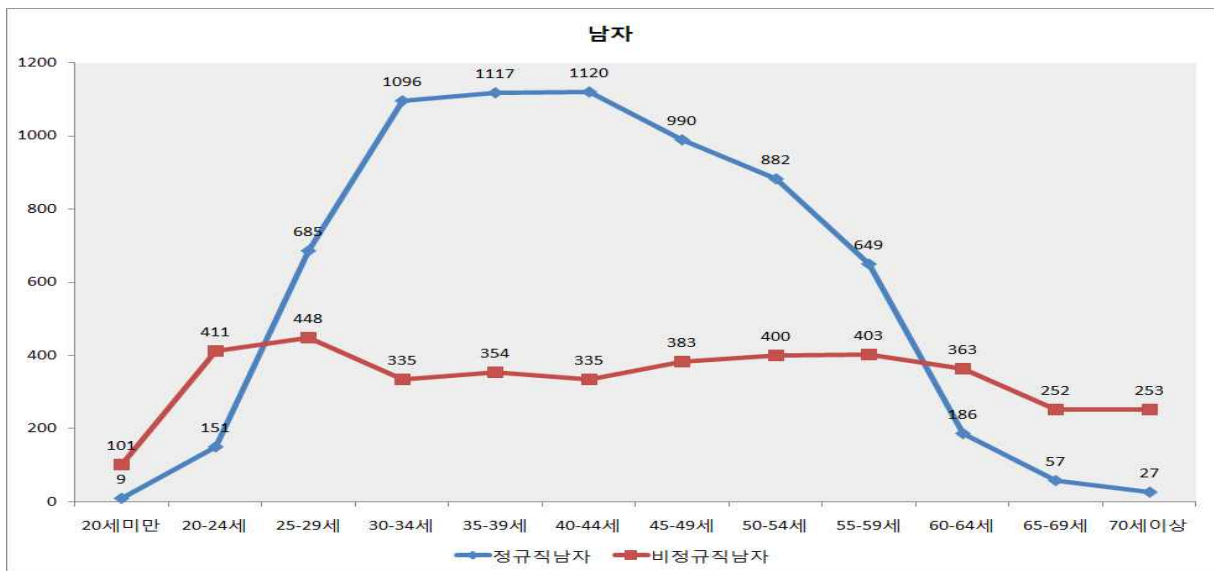




#### 4.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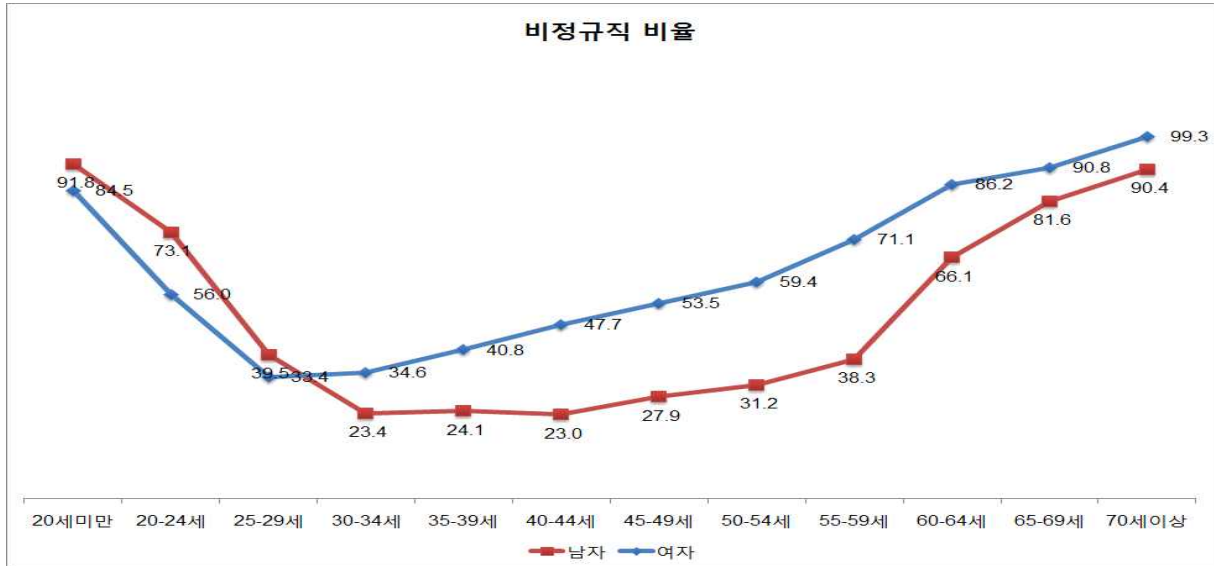
남자는 청년층(20대 초반 이하)과 고령층(60대 이상)만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많다. 여자는 20대 후반부터 40대 초반까지는 정규직이 많고, 그밖에 연령층에서는 비정규직이 많다. 정규직 여자는 20대 후반(68만 명)을 정점으로 크게 감소하지만, 비정규직 여자는 30대 초반(32만 명)을 저점으로 늘어나 40대 초반에는 47만 명, 50대 초반에는 57만 명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는 출산과 자녀 육아기를 거친 여성이 노동시장에 다시 진입하려 할 때 제공되는 일자리가 대부분 비정규직이기 때문이다([그림6] 참조).

[그림6] 남녀 고용형태별 연령계층별 분포 (2016년 8월, 단위: 천 명)



성별 연령계층별 비정규직 비율을 살펴보면, 남자는 30~40대(23~28%)를 저점으로 하는 ‘U자형’을 그리는데 비해, 여자는 20대 후반(33.4%)을 저점으로 하는 ‘V자형’을 그리고 있다. 20대 이하 연령층에서는 남자가 여자보다 비정규직 비율이 높거나 비슷하지만, 30대 이상 연령층에서는 여자가 남자보다 비정규직 비율이 높다([그림7] 참조).

[그림7] 성별 연령계층별 비정규직 비율 (2016년 8월,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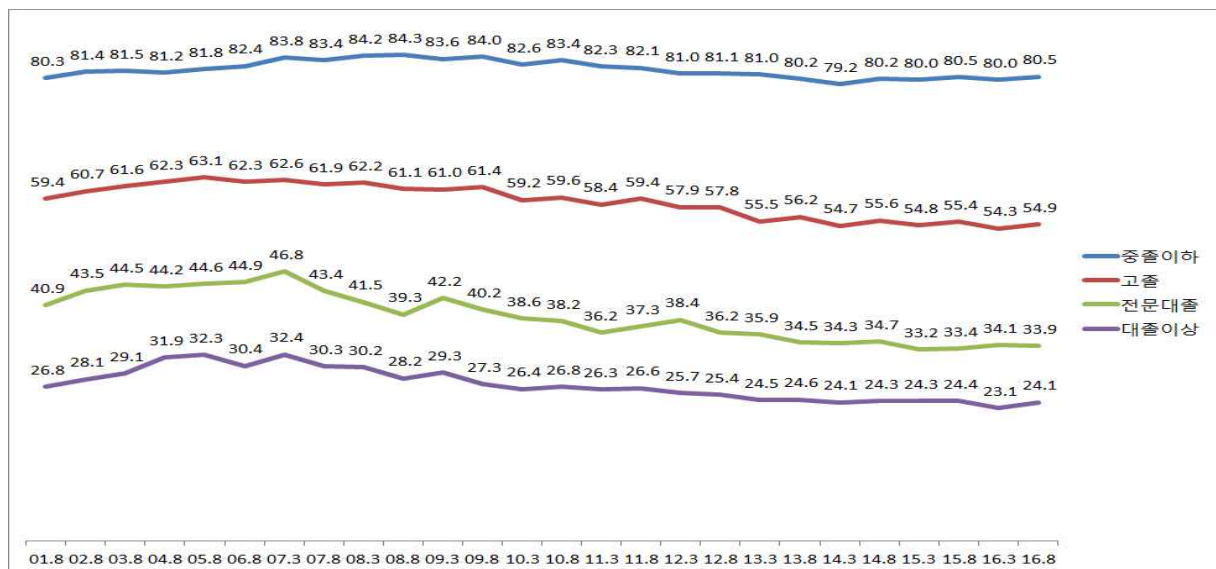
5. 학력

비정규직 874만 명 가운데 중졸 이하는 202만 명(23.1%), 고졸은 413만 명(47.2%)으로, 고졸 이하 학력이 70.3%를 차지하고 있다. 학력별로 비정규직 비율을 살펴보면 중졸 이하 80.5%, 고졸 54.9%, 전문대졸 33.9%, 대졸 이상 24.1%로, 학력이 낮을수록 비정규직 비율이 높고 학력 간 격차가 구조화되어 있다([표4]와 [그림8] 참조).

[표4] 학력별 비정규직 규모 (2016년 8월)

	수(천 명)				비율(%)			
	중졸이하	고졸	전문대졸	대졸이상	중졸이하	고졸	전문대졸	대졸이상
임금노동자	2,507	7,513	2,815	6,793	100.0	100.0	100.0	100.0
정규직	488	3,386	1,861	5,154	19.5	45.1	66.1	75.9
비정규직	2,019	4,127	954	1,639	80.5	54.9	33.9	24.1
임시근로	1,976	3,979	897	1,554	78.8	53.0	31.9	22.9
장기임시근로	1,108	2,509	467	671	44.2	33.4	16.6	9.9
한시근로	868	1,470	430	883	34.6	19.6	15.3	13.0
(기간제)	718	1,086	368	758	28.6	14.5	13.1	11.2
시간제근로	701	1,161	186	436	28.0	15.5	6.6	6.4
호출근로	356	429	30	49	14.2	5.7	1.1	0.7
특수고용	36	260	68	130	1.4	3.5	2.4	1.9
파견용역	329	376	89	103	13.1	5.0	3.2	1.5
(파견)	44	91	30	35	1.8	1.2	1.1	0.5
(용역)	284	285	59	68	11.3	3.8	2.1	1.0
가내근로	12	18	4	7	0.5	0.2	0.1	0.1

[그림8] 연도별 학력별 비정규직 비율 추이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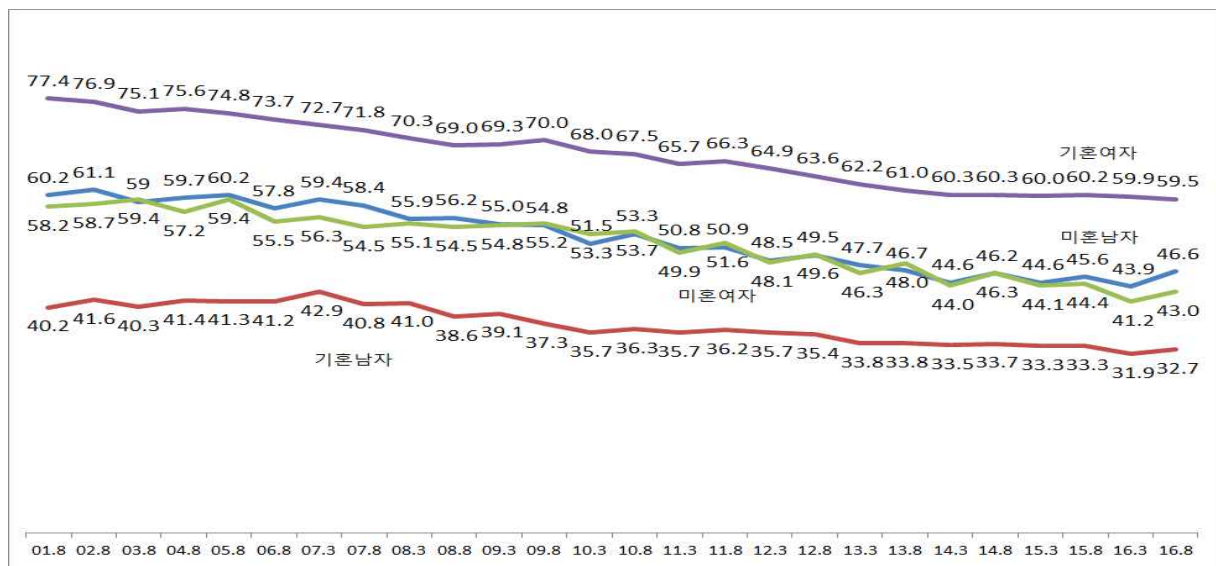
## 6. 성별 혼인여부

비정규직 874만 명 가운데 기혼여자는 358만 명(41.0%), 기혼남자는 256만 명(29.3%)으로 기혼자가 70.3%를 차지하고 있다. 성별 혼인별 비정규직 비율을 살펴보면 미혼남자 46.6%, 기혼남자 32.7%, 미혼여자 43.0%, 기혼여자 59.5%로, 미혼자는 남녀 간에 차이가 없지만, 기혼자는 남녀 간에 차이가 크다([표5]와 [그림9] 참조).

[표5] 성별혼인별 비정규직 규모 (2016년 8월)

	수(천 명)				비중(%)			
	미혼남자	기혼남자	미혼여자	기혼여자	미혼남자	기혼남자	미혼여자	기혼여자
임금노동자	3,178	7,830	2,598	6,020	100.0	100.0	100.0	100.0
정규직	1,698	5,271	1,480	2,439	53.4	67.3	57.0	40.5
비정규직	1,480	2,559	1,118	3,581	46.6	32.7	43.0	59.5
임시근로	1,438	2,480	1,092	3,397	45.2	31.7	42.0	56.4
장기임시근로	859	1,341	550	2,004	27.0	17.1	21.2	33.3
한시근로	578	1,138	541	1,393	18.2	14.5	20.8	23.1
(기간제)	425	944	417	1,144	13.4	12.1	16.1	19.0
시간제근로	334	377	389	1,383	10.5	4.8	15.0	23.0
호출근로	121	484	18	240	3.8	6.2	0.7	4.0
특수고용	43	109	33	309	1.4	1.4	1.3	5.1
파견용역	102	355	44	396	3.2	4.5	1.7	6.6
(파견)	30	71	23	76	0.9	0.9	0.9	1.3
(용역)	72	283	21	320	2.3	3.6	0.8	5.3
가내근로		2	3	36		0.0	0.1	0.6

[그림9] 연도별 성별혼인별 비정규직 비율 추이 (단위: %)



## 7. 산업

비정규직 5명 중 3명(512만 명, 58.6%)이 숙박음식점업(120만 명), 도소매업(109만 명), 사업지원서비스업(96만 명), 제조업(94만 명), 건설업(94만 명) 등 5개 산업에 몰려 있다. 산업별 비정규직 비율은 최대 100.0%(가사서비스업), 최소 13.8%(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로 산업별 격차가 크다([표6] 참조).

[표6] 산업별 비정규직 규모

	수(천 명)				비율(%)			
	비정규직	기간제	시간제	파견용역	비정규직	기간제	시간제	파견용역
농업임업어업	109	10	24		84.5	7.8	18.6	
광업	4	4			22.2	22.2		
제조업	936	311	119	18	23.9	7.9	3.0	0.5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12	8	3	2	13.8	9.2	3.4	2.3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활환경복원	23	9	3	1	25.6	10.0	3.3	1.1
건설업	936	156	116	39	64.0	10.7	7.9	2.7
금융보험업	326	58	26	1	42.3	7.5	3.4	0.1
부동산임대업	250	84	49	18	64.3	21.6	12.6	4.6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160	83	34	3	16.8	8.7	3.6	0.3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서비스업	955	547	146	707	78.3	44.8	12.0	58.0
도매소매업	1,086	187	318	25	48.7	8.4	14.3	1.1
운수업	245	71	34	7	31.9	9.2	4.4	0.9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	149	81	20	17	20.9	11.4	2.8	2.4
숙박음식점업	1,203	139	468	12	81.2	9.4	31.6	0.8
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업	169	57	79		64.0	21.6	29.9	
협회단체수리기타개인서비스업	444	74	150	6	58.0	9.7	19.6	0.8
가구내고용활동 등	54	2	23		100.0	3.7	42.6	
공공행정국방사회보장행정	272	248	169	5	26.8	24.4	16.7	0.5
교육서비스업	620	316	305	5	41.9	21.4	20.6	0.3
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업	780	480	396	31	43.1	26.5	21.9	1.7
국제외국기관	4	4			23.5	23.5		
전 산업	8,737	2,929	2,482	897	44.5	14.9	12.6	4.6



8. 직업

비정규직 2명 중 1명(506만 명, 57.9%)은 단순노무직(263만 명)이거나 판매서비스직(244만 명)이다. 비정규직 비율은 최대 83.7%(단순노무직)에서 최소 19.0%(관리직)로 직업별 격차가 크다([표7] 참조).

[표7] 직업별 비정규직 규모

	수(천 명)				비율(%)			
	비정 규직	기간제	시간제	파견 용역	비정 규직	기간제	시간제	파견 용역
관리자	54	38	3		19.0	13.4	1.1	
전문가	1,224	631	410	37	28.0	14.4	9.4	0.8
사무직	795	426	216	58	18.9	10.1	5.1	1.4
서비스직	1,336	273	551	65	68.9	14.1	28.4	3.4
판매직	1,099	164	273	54	66.4	9.9	16.5	3.3
농림어업숙련직	38	9	7	1	70.4	16.7	13.0	1.9
기능직	930	190	89	58	53.9	11.0	5.2	3.4
장치기계조작조립원	634	263	51	85	28.3	11.8	2.3	3.8
단순노무직	2,627	937	883	537	83.7	29.9	28.1	17.1
전 직업	8,737	2,931	2,483	895	44.5	14.9	12.7	4.6

### 9. 사업체 규모

사업체 규모가 클수록 비정규직 비율이 낮고, 사업체 규모가 작을수록 비정규직 비율이 높다. 300인 이상 사업체에서 비정규직 비율은 14.2%인데, 5인 미만 사업체에서 비정규직 비율은 77.7%다. 이처럼 비정규직 비율이 사업체 규모에 반비례하는 특징은 장기임시근로와 시간제근로, 호출근로, 파견용역근로 모두 마찬가지다. 하지만 기간제근로와 특수고용형태는 1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체에서 높다([표8] 참조).

[표8] 사업체 규모별 비정규직 규모 (2016년 8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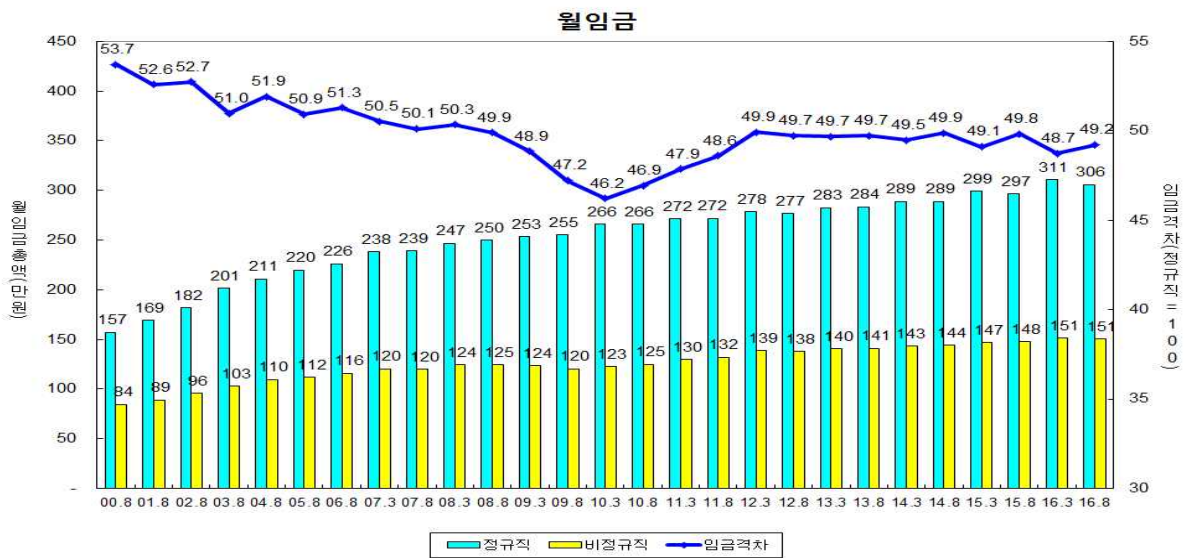
	수(천 명)						비중(%)					
	1-4인	5-9인	10-29인	30-99인	100-299인	300인 이상	1-4인	5-9인	10-29인	30-99인	100-299인	300인 이상
임금노동자	3,531	3,510	4,425	3,763	1,961	2,435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정규직	787	1,468	2,477	2,548	1,518	2,089	22.3	41.8	56.0	67.7	77.4	85.8
비정규직	2,744	2,042	1,948	1,215	443	346	77.7	58.2	44.0	32.3	22.6	14.2
임시근로	2,693	1,974	1,860	1,142	405	331	76.3	56.2	42.0	30.3	20.7	13.6
장기임시근로	1,951	1,245	961	458	92	47	55.3	35.5	21.7	12.2	4.7	1.9
한시근로	742	729	899	684	313	284	21.0	20.8	20.3	18.2	16.0	11.7
(기간제)	461	532	768	618	283	269	13.1	15.2	17.4	16.4	14.4	11.0
시간제근로	1,043	559	460	273	85	62	29.5	15.9	10.4	7.3	4.3	2.5
호출근로	338	303	169	43	8	2	9.6	8.6	3.8	1.1	0.4	0.1
특수고용	91	49	186	151	15	3	2.6	1.4	4.2	4.0	0.8	0.1
파견용역	206	221	257	149	44	20	5.8	6.3	5.8	4.0	2.2	0.8
(파견)	55	30	46	41	20	9	1.6	0.9	1.0	1.1	1.0	0.4
(용역)	151	191	212	108	24	10	4.3	5.4	4.8	2.9	1.2	0.4
가내근로	30	2	3	2	4		0.8	0.1	0.1	0.1	0.2	

## II. 비정규직 임금·노동시간·노동복지 등

### 1. 월 평균임금

지난 3개월간 월 평균임금 총액은 정규직이 2015년 8월 297만 원에서 2016년 8월 306만 원으로 9만 원(3.1%) 인상되고, 비정규직은 148만 원에서 151만 원으로 3만 원(1.9%) 인상되었다. 그 결과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격차는 49.8%에서 49.2%로 0.6%p 확대되었다([그림10]과 [표9] 참조).

[그림10] 고용형태별 월 평균임금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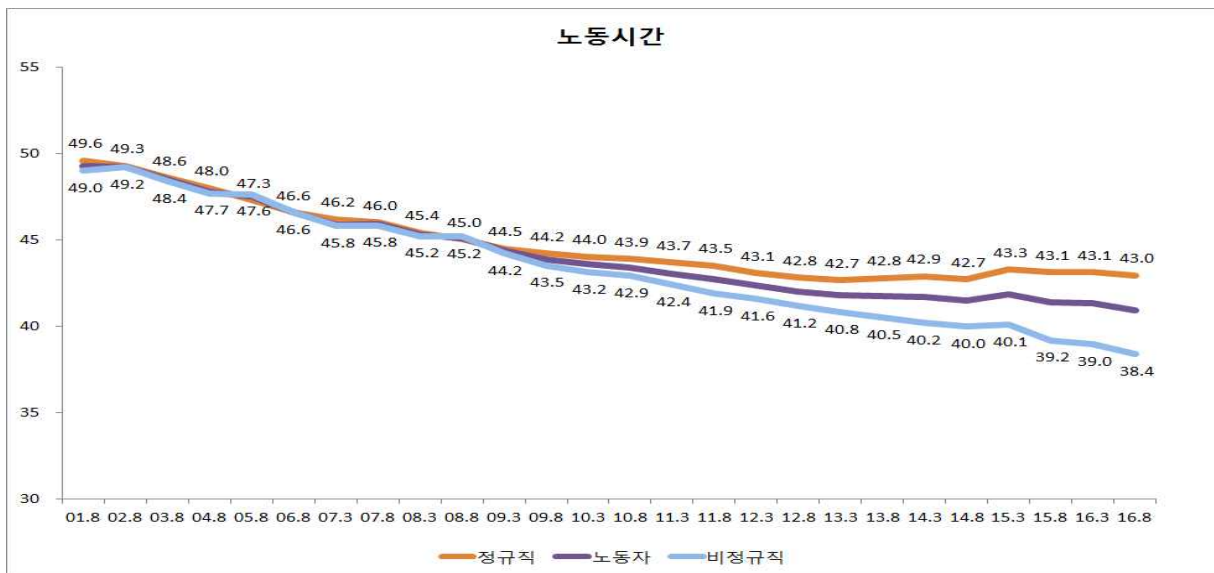
[표9] 연도별 고용형태별 월 평균임금 및 격차 (정규직=100)

	금액(만 원)							격차(%)						
	13년 8월	14년 3월	14년 8월	15년 3월	15년 8월	16년 3월	16년 8월	13년 8월	14년 3월	14년 8월	15년 3월	15년 8월	16년 3월	16년 8월
임금노동자	218	223	223	231	230	241	237	76.9	77.4	77.3	77.3	77.4	77.6	77.4
정규직	284	289	289	299	297	311	306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비정규직	141	143	144	147	148	151	151	49.7	49.4	49.9	49.1	49.8	48.7	49.2
임시근로	140	142	143	146	147	150	150	49.3	49.1	49.6	48.7	49.4	48.4	48.9
장기임시근로	132	134	137	140	139	142	141	46.5	46.4	47.5	46.8	47.0	45.8	46.2
한시근로	150	153	152	154	156	161	160	53.0	53.0	52.6	51.4	52.5	51.8	52.3
(기간제근로)	158	160	158	160	163	167	166	55.8	55.4	54.8	53.4	54.8	53.7	54.1
시간제근로	65	67	66	73	71	75	74	23.1	23.2	22.9	24.4	23.8	24.2	24.2
호출근로	121	122	127	127	129	137	137	42.7	42.1	44.1	42.3	43.5	44.1	44.9
특수고용	180	189	207	200	197	198	200	63.5	65.5	71.7	66.7	66.5	63.9	65.4
파견용역	139	142	142	146	149	150	152	49.0	49.1	49.1	48.9	50.1	48.2	49.8
(파견)	150	160	153	163	159	165	174	52.9	55.3	52.9	54.4	53.6	53.2	57.0
(용역)	135	137	138	142	145	145	146	47.7	47.5	47.9	47.3	49.0	46.7	47.8
가내근로	61	68	60	80	83	72	78	21.4	23.6	20.9	26.8	28.0	23.3	25.4

## 2. 노동시간

정규직은 주당 노동시간이 2001년 8월 49.6시간에서 2014년 8월 42.7시간으로 6.9시간 단축되었다. 그러나 2016년 8월에는 43.0시간으로 0.3시간 증가했다. 비정규직은 2001년 8월 49.0시간에서 2014년 8월 40.0시간으로 9.0시간 단축되었고, 2016년 8월에는 38.4시간으로 다시 1.6시간 감소했다.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탈법적인 장시간 노동 비중은 비정규직(12.9%)이 정규직(7.7%)보다 많고, 주 36시간 미만 단시간 노동도 비정규직(29.9%)이 정규직(0.2%)보다 많다([그림11]과 [표10] 참조).

[그림11] 고용형태별 노동시간 추이 (단위: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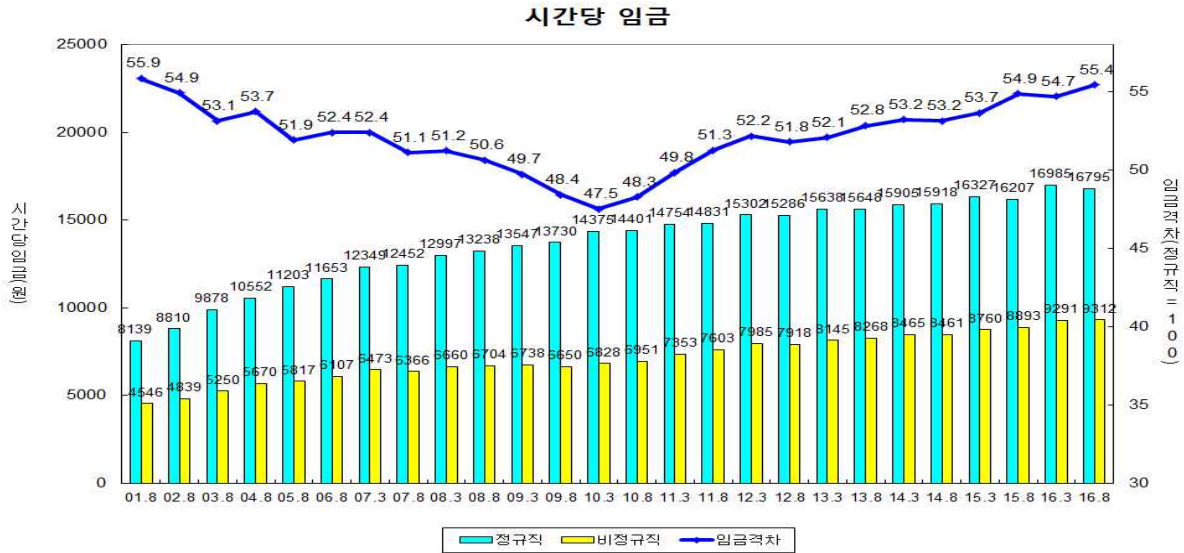
[표10] 연도별 고용형태별 주당 노동시간 평균값과 분포

	(평소) 노동시간							2016년 8월 노동시간 계층별 분포(%)					
	13년 8월	14년 3월	14년 8월	15년 3월	15년 8월	16년 3월	16년 8월	36미만	36-40	41-44	45-48	49-52	52초과
임금노동자	41.7	41.7	41.5	41.9	41.4	41.3	40.9	13.5	57.0	2.4	11.1	6.1	10.0
정규직	42.8	42.9	42.7	43.3	43.1	43.1	43.0	0.2	71.6	2.6	11.6	6.3	7.7
비정규직	40.5	40.2	40.0	40.1	39.2	39.0	38.4	29.9	38.8	2.1	10.4	5.8	12.9
임시근로	40.5	40.3	40.0	40.2	39.2	39.1	38.4	29.3	39.0	2.1	10.5	5.9	13.1
장기임시근로	41.7	41.2	41.1	41.0	40.1	40.0	39.6	29.2	33.8	2.3	11.8	7.6	15.4
한시근로	39.1	39.0	38.4	39.0	38.2	37.9	36.9	29.6	45.9	1.8	8.9	3.8	10.1
(기간제근로)	38.7	38.6	38.1	38.7	37.9	38.0	36.9	28.0	48.9	1.8	8.4	3.4	9.6
시간제근로	21.2	20.6	21.0	21.6	20.7	20.9	20.8	99.8	0.2				
호출근로	39.1	37.7	38.4	37.2	37.1	37.2	37.7	32.1	37.7	1.7	11.7	8.1	8.7
특수고용	39.9	39.8	40.6	40.0	39.5	39.3	39.3	18.0	57.3	3.0	9.9	6.1	5.7
파견용역	44.0	44.1	44.1	44.0	43.0	43.0	42.5	16.9	48.7	2.9	10.4	3.8	17.3
(파견)	39.3	41.0	40.7	38.6	37.5	37.8	39.1	20.8	49.5	2.0	12.4	5.4	9.9
(용역)	45.5	44.9	45.2	45.5	44.7	44.6	43.5	15.8	48.4	3.2	9.8	3.4	19.4
가내근로	32.1	32.0	36.0	34.4	32.1	30.8	30.1	65.9	24.4	2.4	2.4	0	4.9

### 3. 시간당 임금

정규직은 지난 3개월간 시간당 임금 평균이 2015년 8월 16,207원에서 2016년 8월 16,795원으로 588원(3.6%) 인상되고, 비정규직은 8,893원에서 9,312원으로 419원(4.7%) 인상되었다.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격차는 54.9%에서 55.4%로 0.5%p 축소되었다([그림12]와 [표11] 참조).

[그림12] 고용형태별 시간당 임금 추이 (단위: 원, %)



[표11] 연도별 고용형태별 시간당 임금 및 격차 (정규직 = 100)

	금액(원)							격차(%)						
	13년 8월	14년 3월	14년 8월	15년 3월	15년 8월	16년 3월	16년 8월	13년 8월	14년 3월	14년 8월	15년 3월	15년 8월	16년 3월	16년 8월
임금노동자	12,263	12,577	12,533	12,951	12,918	13,627	13,464	78.4	79.1	78.7	79.3	79.7	80.2	80.2
정규직	15,648	15,905	15,918	16,327	16,207	16,985	16,795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비정규직	8,268	8,465	8,461	8,760	8,893	9,291	9,312	52.8	53.2	53.2	53.7	54.9	54.7	55.4
임시근로	8,175	8,374	8,392	8,633	8,762	9,181	9,204	52.2	52.6	52.7	52.9	54.1	54.1	54.8
장기임시근로	7,482	7,759	7,823	8,209	8,235	8,494	8,427	47.8	48.8	49.1	50.3	50.8	50.0	50.2
한시근로	9,084	9,265	9,195	9,236	9,439	10,069	10,216	58.1	58.3	57.8	56.6	58.2	59.3	60.8
(기간제근로)	9,591	9,707	9,603	9,648	9,891	10,462	10,570	61.3	61.0	60.3	59.1	61.0	61.6	62.9
시간제근로	7,683	8,127	7,645	8,621	8,423	9,199	8,984	49.1	51.1	48.0	52.8	52.0	54.2	53.5
호출근로	7,137	7,372	7,574	7,841	7,941	8,436	8,413	45.6	46.4	47.6	48.0	49.0	49.7	50.1
특수고용	10,546	11,139	11,906	11,585	11,536	11,894	11,877	67.4	70.0	74.8	71.0	71.2	70.0	70.7
파견용역	7,556	7,687	7,645	7,911	8,183	8,353	8,735	48.3	48.3	48.0	48.5	50.5	49.2	52.0
(파견)	8,695	8,929	8,618	9,503	9,600	9,819	10,234	55.6	56.1	54.1	58.2	59.2	57.8	60.9
(용역)	7,197	7,359	7,333	7,449	7,730	7,896	8,302	46.0	46.3	46.1	45.6	47.7	46.5	49.4
가내근로	4,615	8,251	3,939	5,538	6,288	6,049	6,590	29.5	51.9	24.7	33.9	38.8	35.6	39.2



#### 4. 임금불평등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에서 전 산업 월 임금총액 평균값을 계산하면 2015년 8월 230만 원에서 2016년 8월 237만 원으로 7만 원 증가했다. 하위 10%의 월 임금총액은 80만 원에서 변함이 없고, 상위 10%의 월 임금총액만 420만 원에서 450만 원으로 30만 원 증가했다. 이에 따라 상위10%와 하위10% 임금격차(P9010)는 5.25배에서 5.63배로 증가했다.

시간당 임금 평균값은 2015년 8월 12,918원에서 2016년 8월 13,464원으로 546원 증가했다. 하위 10%는 5,410원에서 5,757원으로 347원 증가했고, 상위 10%는 23,602원에서 25,041원으로 1,439원 증가했다. 이에 따라 시간당 임금격차(P9010)는 4.36배에서 4.35배로 거의 변함이 없다 ([표12] 참조).

[표12] 연도별 임금불평등

	월 임금총액(만 원)							시간당 임금(원)						
	13년 8월	14년 3월	14년 8월	15년 3월	15년 8월	16년 3월	16년 8월	13년 8월	14년 3월	14년 8월	15년 3월	15년 8월	16년 3월	16년 8월
평균값	218	223	223	231	230	241	237	12,263	12,577	12,533	12,951	12,918	13,627	13,464
하위 10%	80	80	80	80	80	80	80	4,605	4,934	4,989	5,263	5,410	5,757	5,757
50%	180	190	190	200	200	200	200	9,786	10,074	10,234	10,362	10,362	10,874	10,788
90%	400	400	400	420	420	450	450	23,026	23,026	23,026	23,602	23,602	25,905	25,041
p9010	5.00	5.00	5.00	5.25	5.25	5.63	5.63	5.00	4.67	4.62	4.48	4.36	4.50	4.35
p5010	2.25	2.38	2.38	2.50	2.50	2.50	2.50	2.13	2.04	2.05	1.97	1.92	1.89	1.87
p9050	2.22	2.11	2.11	2.10	2.10	2.25	2.25	2.35	2.29	2.25	2.28	2.28	2.38	2.32

성별 고용형태별 임금격차도 매우 크다. 2016년 8월의 월 임금총액이 여자(176만 원)는 남자(285만 원)의 61.7%고, 비정규직(151만 원)은 정규직(306만 원)의 49.2%다. 남자 정규직 임금(344만 원)을 100이라 할 때 남자 비정규직(183만 원)은 53.1%, 여자 정규직(239만 원)은 69.4%, 여자 비정규직(123만 원)은 35.8%다. 남녀 차별보다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이 더 심하고, 남녀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이 비정규직 여성에 집중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시간당 임금격차는 [표13] 참조).

[표13] 남녀 고용형태별 임금격차 (시간당 임금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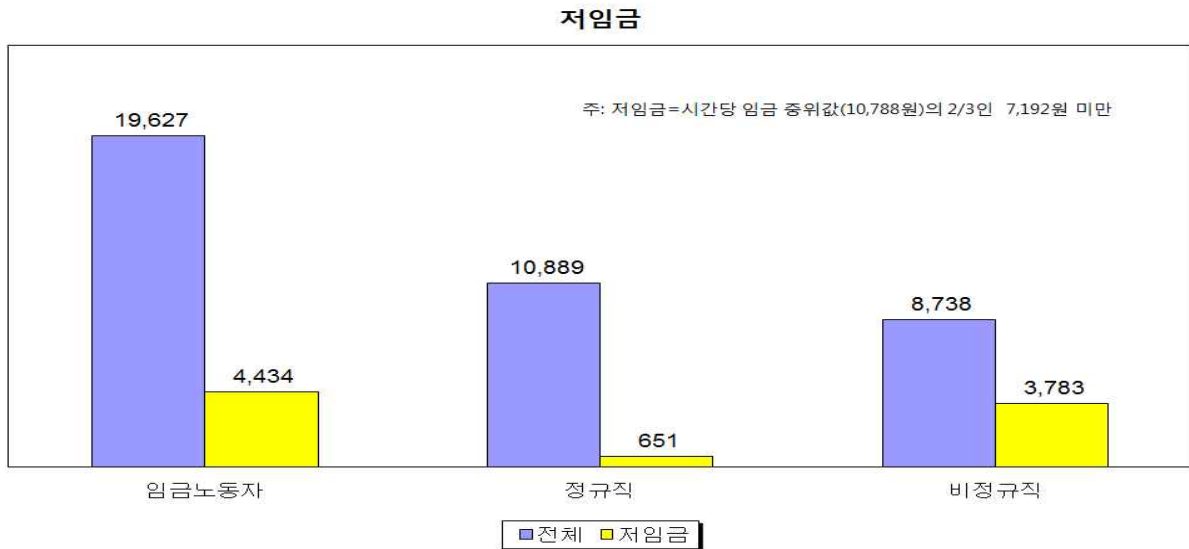
	시간당 임금(원)							임금격차(%)						
	13년 8월	14년 3월	14년 8월	15년 3월	15년 8월	16년 3월	16년 8월	13년 8월	14년 3월	14년 8월	15년 3월	15년 8월	16년 3월	16년 8월
남자	14,532	14,862	14,808	15,253	15,174	16,055	15,741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여자	9,258	9,586	9,562	9,944	10,009	10,512	10,555	63.7	64.5	64.6	65.2	66.0	65.5	67.1
정규직	15,648	15,905	15,918	16,327	16,207	16,985	16,795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비정규직	8,268	8,465	8,461	8,760	8,893	9,291	9,312	52.8	53.2	53.2	53.7	54.9	54.7	55.4
남자정규직	17,551	17,912	17,891	18,285	18,135	19,050	18,773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남자비정규직	9,450	9,545	9,598	9,960	10,097	10,570	10,509	53.8	53.3	53.6	54.5	55.7	55.5	56.0
여자정규직	11,949	12,148	12,227	12,687	12,683	13,233	13,278	68.1	67.8	68.3	69.4	69.9	69.5	70.7
여자비정규직	7,248	7,538	7,478	7,729	7,860	8,224	8,284	41.3	42.1	41.8	42.3	43.3	43.2	44.1

5. 저임금

EU(유럽연합) LoWER(Low Wage Employment Research Network, 저임금고용연구네트워크)는 ‘임금노동자 중위임금 3분의 2 미만’을 저임금 계층, ‘중위임금 3분의 2 이상 2분의 3 미만’을 중간임금 계층, ‘중위임금 2분의 3 이상’을 고임금 계층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위임금(10,788원)의 3분의 2’인 ‘시간당 임금 7,192원 미만’을 저임금 계층으로 분류하면, 전체 노동자 1,963만 명 가운데 443만 명(22.6%)이 저임금계층이고, 정규직은 65만 명(6.0%), 비정규직은 378만 명(43.3%)이 저임금 계층이다. 정규직은 16명 중 1명, 비정규직은 2명 중 1명이 저임금 계층이다([그림13] 참조).

월 임금총액 기준으로 ‘중위임금(200만 원)의 3분의 2’인 ‘133만 원 미만’을 저임금 계층으로 분류하면, 전체 노동자 1,963만 명 가운데 468만 명(23.9%)이 저임금계층이다.

[그림13] 고용형태별 저임금 노동자 규모 (2016년 8월, 단위: 천 명)



[표14] 연도별 저임금 계층 비율 (EU LoWER 기준,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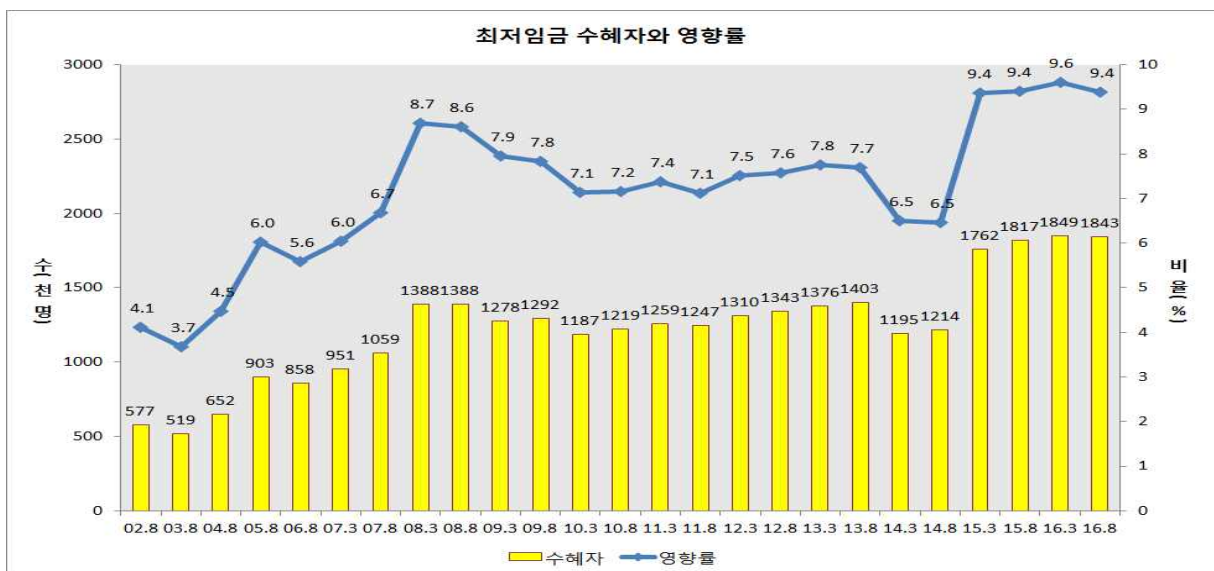
	월 임금총액 기준							시간당 임금 기준						
	13년 8월	14년 3월	14년 8월	15년 3월	15년 8월	16년 3월	16년 8월	13년 8월	14년 3월	14년 8월	15년 3월	15년 8월	16년 3월	16년 8월
저임금	21.3	25.0	24.5	25.6	25.5	23.5	23.9	24.7	24.2	24.1	25.1	24.5	23.5	22.6
중간임금	51.1	49.1	49.5	48.0	48.3	48.3	48.4	48.3	48.7	49.4	48.6	49.1	50.1	51.1
고임금	27.6	25.8	26.1	26.4	26.3	28.2	27.8	27.0	27.0	26.5	26.3	26.4	26.4	26.3

## 6. 법정 최저임금 수혜자와 미달자

2016년 법정 최저임금은 시간당 6,030원이다. 2016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에서 최저임금 수혜자(최저임금의 90~110% 수령 노동자)<sup>1)</sup>는 184만 명이고 최저임금 영향률은 9.4%다.

최저임금 수혜자(영향률)는 2003년 8월 52만 명(3.7%)에서 2008년 3월 139만 명(8.7%)으로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 2008년 8월부터 감소세로 돌아서 2010년 3월에는 119만 명(7.1%)으로 감소했고, 그 뒤 완만한 증가세로 돌아서 2013년 8월에는 140만 명(7.7%)으로 증가했다. 2014년에는 120~121만 명(6.5%)으로 큰 폭으로 감소했지만, 2015년 3월 이후는 176~185만 명(9.4~9.6%)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그림14]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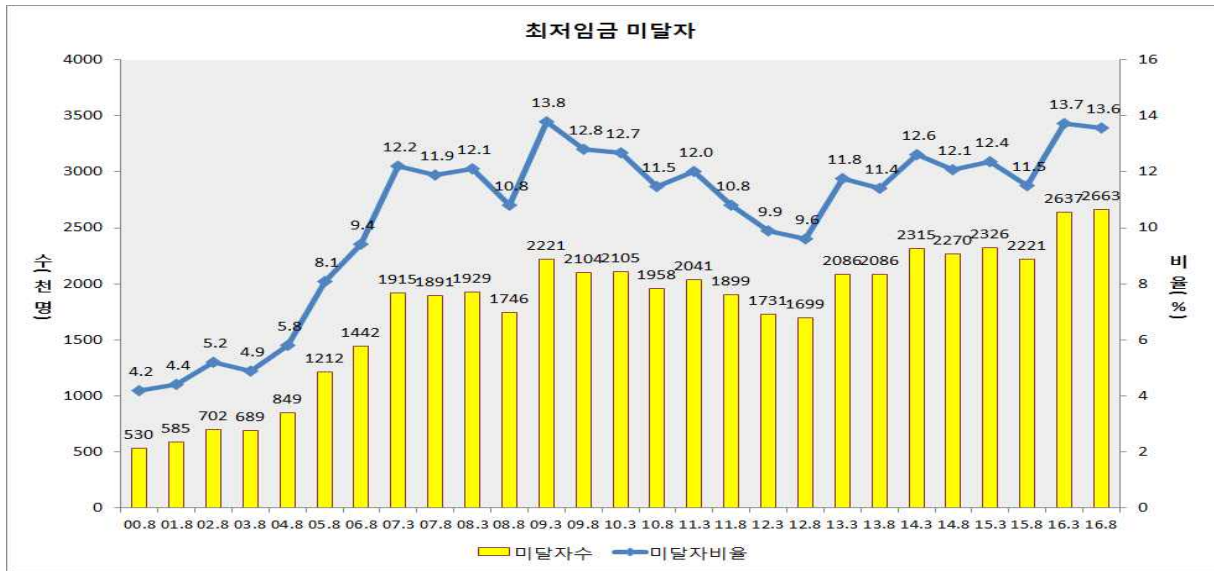
[그림14] 최저임금 수혜자와 영향률 (단위: 천 명, %)



2016년 8월 법정 최저임금 미달자는 266만 명(13.6%)이다. 연도별로 법정 최저임금 미달자는 2001년 8월 59만 명(4.4%)에서 2009년 3월 222만 명(13.8%)으로 꾸준히 증가하다가, 2009년 8월부터 감소세로 돌아서 2012년 8월에는 170만 명(9.6%)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2013년 3월부터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 2016년 8월에는 266만 명(13.6%)으로 4년 만에 96만 명(4.0%p) 증가했다. 노동자 7명 중 1명꼴로 법정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법정 최저임금제도가 ‘저임금계층 일소, 임금격차 해소, 분배구조 개선’이라는 본연의 목적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가 근로감독 행정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음을 말해준다. 정부부문인 공공행정에서 최저임금 미달자가 13만 명(12.6%)이나 되는 것은 정부가 선량한 사용자로서 민간에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사실조차 망각하고 있음을 말해준다([그림15] 참조).

1) 최저임금 수혜자와 영향률을 정확하게 추정하는 것은 쉽지 않다. ILO(2013)에 따라 최저임금의 90~110%를 수령하는 노동자를 최저임금 수혜자로 정의하고, 전체 노동자 대비 최저임금 수혜자 비율을 최저임금 영향률로 정의한다.

[그림15] 법정 최저임금 미달자 및 비율 추이 (단위: 천 명, %)



시급제 노동자 가운데 법정 최저임금(6,030원) 미달자는 7만 명(5.2%)이다.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은 56만 명(40.2%)이며, 2016년 최저임금보다는 많지만 7천 원 이하인 사람이 44만 명(31.8%)이다. 이상은 최저임금이 시급제 노동자들 임금에 매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말해준다([표15] 참조).

[표15] 시급제 노동자의 시간당 임금 분포 (단위: 천 명, %)

	최저임금 미달	6030원	6031~7000원	7001~8000원	8001~9000원	9,001~10,000원	1만 원초과	전체
수(천 명)	72	557	440	120	36	71	87	1,384
비율(%)	5.2	40.2	31.8	8.7	2.6	5.1	6.3	100.0
누적%	5.2	45.4	77.2	86.0	88.6	93.7	100.0	

2016년 8월 최저임금 영향률은 여성(13.8%)이 남성(6.0%)보다 높고, 기혼여성(14.5%), 미혼여성(12.0%), 미혼남성(10.2%), 기혼남자(4.3%) 순이다. 학력별로는 학생(33.2%)과 저학력층(18.9%), 연령별로는 청년(23.9%)과 고령자(14.8%)가 높다. 고용형태별로는 비정규직(18.0%) 가운데서도 특히 시간제근로(24.8%)가 높고, 종사상 지위별로는 임시직(21.3%)과 일용직(19.2%)이 높다.

산업별로는 숙박음식점업(31.3%)과 가구내고용활동(24.1%)이 특히 높고, 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업(9.5%), 공공행정국방사회보장행정(5.6%) 등 공공부문도 높은 편에 속한다. 직업별로는 서비스직(23.6%)과 단순노무직(20.4%)이 높고, 5인 미만(20.7%), 5~9인(14.1%) 등 사업체 규모가 작을수록 최저임금 영향률이 높다. 노조유무별로는 무노조(11.6%), 유노조 비조합원(4.9%), 유노조 조합원(1.1%) 순이다.

이상을 종합하면 최저임금 수혜자는 여성, 학생과 저학력층, 청년과 고령자, 숙박음식점업, 서비스직과 단순노무직, 영세사업체, 비정규직 가운데서도 시간제 근로자, 임시직과 일용직, 무노조 사

업장, 비조합원 등 사회적 약자들이다. 최저임금은 여성 친화적이고, 청년 학생과 저학력 고령자 친화적이며, 무노조 비조합원 친화적이고, 비정규직 친화적이다.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사회적 약자 184만 명에게 혜택이 돌아간다([표16] 참조).

2016년 8월 최저임금 미달자 비율은 여성(19.4%)이 남성(9.0%)보다 높고, 기혼여성(21.4%), 미혼여성(14.8%), 미혼남자(12.7%), 기혼남자(7.5%) 순이다. 학력별로는 학생(40.0%)과 저학력층(38.2%), 연령별로는 청년(29.4%)과 고령자(29.7%)가 높다. 고용형태별로는 비정규직(27.9%) 가운데서도 특히 가내근로(61.9%)와 시간제근로(41.2%)가 높고, 종사상 지위별로 임시직(32.1%)과 일용직(38.9%)이 높다.

산업별로는 가구내고용활동 등(63.0%), 농림어업(46.2%), 숙박음식점업(35.5%)이 특히 높고, 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업(15.2%), 공공행정국방사회보장행정(12.6%) 등 공공부문도 높은 편에 속한다. 직업별로는 단순노무직(38.2%)과 서비스직(28.6%)이 높고, 5인 미만(33.6%), 5~9인(17.9%) 등 사업체 규모가 작을수록 최저임금 미달자 비율이 높다. 노조유무별로는 무노조(16.7%), 유노조 비조합원(6.9%), 유노조 조합원(1.8%) 순이다.

이상을 종합하면 최저임금 미달자는 최저임금 수혜자와 동질적인 집단이다. 여성, 학생과 저학력층, 청년과 고령자, 숙박음식점업, 서비스직과 단순노무직, 영세사업체, 비정규직 그 가운데서도 시간제 근로자, 임시직과 일용직, 무노조 사업장, 비조합원 등 사회적 약자들이다.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근로감독 행정을 강화하면 이들 사회적 약자에게 혜택이 돌아간다([표16] 참조).



[표16] 최저임금 수혜자와 미달자 실태 (2016년 8월)

		수(천 명)						비율(%)	
		전체	90% 미만	90~100%미만	100~110%미만	수혜자	미달자	영향률	미달률
전체		19,626	1,640	1,023	820	1,843	2,663	9.4	13.6
성별	남자	11,007	621	371	286	657	992	6.0	9.0
	여자	8,619	1,019	652	534	1,186	1,671	13.8	19.4
혼인	미혼	5,776	411	379	256	635	790	11.0	13.7
	유배우	12,181	856	499	462	961	1,355	7.9	11.1
	사별	737	254	89	46	135	343	18.3	46.5
	이혼	931	119	56	56	112	175	12.0	18.8
성별 혼인	미혼남자	3,178	222	182	141	323	404	10.2	12.7
	기혼남자	7,830	399	189	146	335	588	4.3	7.5
	미혼여자	2,597	188	197	115	312	385	12.0	14.8
	기혼여자	6,022	831	455	419	874	1,286	14.5	21.4
가구주	가구주	10,859	830	380	331	711	1,210	6.5	11.1
	배우자	4,104	417	276	264	540	693	13.2	16.9
	기타가구원	4,664	394	367	225	592	761	12.7	16.3
학력	중졸이하	2,473	683	261	207	468	944	18.9	38.2
	고졸	6,758	595	399	365	764	994	11.3	14.7
	전문대졸	2,814	87	80	73	153	167	5.4	5.9
	대졸이상	6,792	137	104	92	196	241	2.9	3.5
	재학휴학중	790	138	178	84	262	316	33.2	40.0
연령	25세미만	1,635	224	257	133	390	481	23.9	29.4
	25-34세	4,509	138	126	130	256	264	5.7	5.9
	35-44세	4,812	171	103	130	233	274	4.8	5.7
	45-54세	4,700	271	193	183	376	464	8.0	9.9
	55세이상	3,971	837	344	244	588	1,181	14.8	29.7
고용 형태	정규직	10,889	116	111	159	270	227	2.5	2.1
	비정규직	8,738	1,524	912	662	1,574	2,436	18.0	27.9
세부 고용 형태	임시근로	8,406	1,508	899	645	1,544	2,407	18.4	28.6
	장기임시근로	4,755	929	558	399	957	1,487	20.1	31.3
	한시근로	3,651	579	342	246	588	921	16.1	25.2
	(기간제)	2,930	438	225	169	394	663	13.4	22.6
	시간제근로	2,483	652	371	245	616	1,023	24.8	41.2
	호출근로	862	201	78	51	129	279	15.0	32.4
	특수고용형태	494	57	32	10	42	89	8.5	18.0
	파견용역	897	148	83	73	156	231	17.4	25.8
	(파견)	201	24	15	14	29	39	14.4	19.4
	(용역)	696	123	69	59	128	192	18.4	27.6
가내근로	42	23	3	4	7	26	16.7	61.9	
종사상 지위	상용	12,966	227	200	255	455	427	3.5	3.3
	임시	5,197	1,011	657	451	1,108	1,668	21.3	32.1
	일용	1,464	402	167	114	281	569	19.2	38.9

[표16] 최저임금 수혜자와 미달자 실태 (2016년 8월, 계속)

		수(천 명)					비율(%)		
		전체	90% 미만	90 ~ 100% 미만	100 ~ 110% 미만	수혜자	미달자	영향률	미달률
산업	농림어업	130	44	16	9	25	60	19.2	46.2
	광업	18	-	-	-	-	-	-	-
	제조업	3,913	137	97	80	177	234	4.5	6.0
	전기가스수도사업	87	1	-	1	1	1	1.1	1.1
	하수환경복원업	90	2	1	1	2	3	2.2	3.3
	건설업	1,462	74	45	35	80	119	5.5	8.1
	금융보험업	770	17	16	2	18	33	2.3	4.3
	부동산임대업	390	59	30	14	44	89	11.3	22.8
	전문과학기술	954	17	12	9	21	29	2.2	3.0
	사업지원서비스업	1,220	173	91	77	1	264	13.8	21.6
	도소매업	2,228	231	188	124	312	419	14.0	18.8
	운수업	768	58	32	35	67	90	8.7	11.7
	출판통신정보	714	5	6	6	12	11	1.7	1.5
	숙박음식점업	1,481	282	244	219	463	526	31.3	35.5
	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업	263	29	28	15	43	57	16.3	21.7
	기타개인서비스업	767	146	44	50	94	190	12.3	24.8
	가구내고용활동 등	54	27	7	6	13	34	24.1	63.0
	공공행정사회보장행정	1,014	89	39	18	57	128	5.6	12.6
	교육서비스업	1,480	64	40	37	77	104	5.2	7.0
	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업	1,809	187	88	84	172	275	9.5	15.2
국제외국기관	17								
직업	관리자	285		1		1	1	0.4	0.4
	전문가	4,376	96	60	78	138	156	3.2	3.6
	사무직	4,216	71	62	57	119	133	2.8	3.2
	서비스직	1,940	306	248	209	457	554	23.6	28.6
	판매직	1,656	168	187	89	276	355	16.7	21.4
	농림어업숙련직	54	7	3	3	6	10	11.1	18.5
	기능직	1,726	71	50	39	89	121	5.2	7.0
	장치기계조작	2,238	86	52	66	118	138	5.3	6.2
단순노무직	3,137	835	362	278	640	1,197	20.4	38.2	
규모	1~4인	3,531	751	436	296	732	1,187	20.7	33.6
	5~9인	3,510	363	265	230	495	628	14.1	17.9
	10~29인	4,425	318	192	155	347	510	7.8	11.5
	30~99인	3,763	132	94	86	180	226	4.8	6.0
	100~299인	1,960	53	24	42	66	77	3.4	3.9
	300인 이상	2,436	24	12	10	22	36	0.9	1.5
노조	무노조	14,588	1,488	947	738	1,685	2,435	11.6	16.7
	유노조비조합원	2,698	123	62	70	132	185	4.9	6.9
	유노조조합원	2,341	29	14	12	26	43	1.1	1.8

## 7. 임금지급 방식

정규직은 월급제(70.2%)와 연봉제(26.8%)의 비중이 97.0%인데, 비정규직은 월급제(51.7%), 일급제(20.0%), 시급제(14.2%), 실적급제(8.9%), 연봉제(4.7%) 순으로 임금지급 방식이 다양하다. 특히 시간제근로는 월급제(37.7%), 시급제(36.0%), 일급제(17.4%), 실적급제(7.4%) 순으로 임금지급 방식이 다양하다. 호출근로는 일급제(87.4%), 특수고용형태는 실적급제(100.0%), 파견용역은 월급제(72.9%), 가내근로는 실적급제(63.4%)가 주를 이루고 있다([표17]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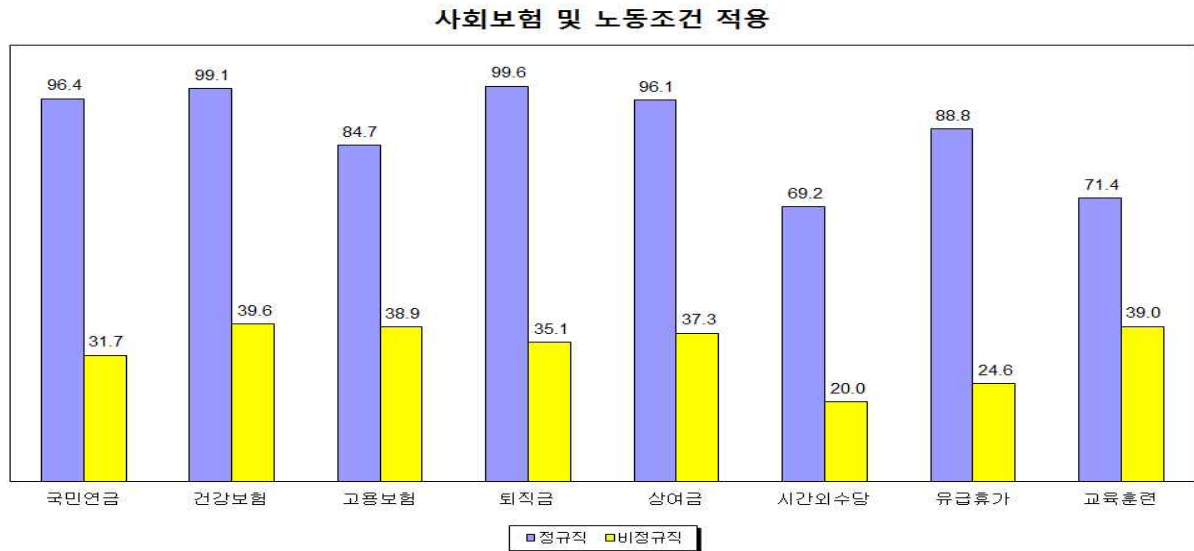
[표17] 고용형태별 임금지급 방식 (2016년 8월, 단위: %)

	시급제	일급제	주급제	월급제	연봉제	실적급제	기타	전체
임금노동자	7.1	9.5	.2	61.9	17.0	4.4	.0	100.0
정규직	1.3	.9	.0	70.2	26.8	.8	.0	100.0
비정규직	14.2	20.0	.3	51.7	4.7	8.9	.1	100.0
임시근로	14.4	20.8	.3	50.7	4.5	9.2	.1	100.0
장기임시근로	14.0	26.6	.4	44.5	.0	14.3	.1	100.0
한시근로	14.9	13.2	.2	58.8	10.3	2.6	.1	100.0
(기간제근로)	12.7	11.1	.2	62.0	12.2	1.8	.1	100.0
시간제근로	36.0	17.4	.7	37.7	.7	7.4	.2	100.0
호출근로	7.6	87.4	.2			4.8		100.0
특수고용						100.0		100.0
파견용역	7.5	13.9	.1	72.9	5.1	.4	.0	100.0
(파견)	7.0	13.0	.5	66.5	11.5	1.5	.0	100.0
(용역)	7.6	14.1		75.0	3.2	.1		100.0
가내근로	4.9	9.8		19.5	2.4	63.4		100.0

### 8. 사회보험 가입 및 노동조건 적용률

현 직장에서 사회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가입률은 정규직은 85~99%인데, 비정규직은 32~40%밖에 안 된다. 정규직은 퇴직금·상여금·시간외수당·유급휴가를 69~100% 적용받지만, 비정규직은 20~37%만 적용받고 있다([그림16]과 [표18] 참조).

[그림16] 고용형태별 사회보험 및 노동조건 적용률 (2016년 8월,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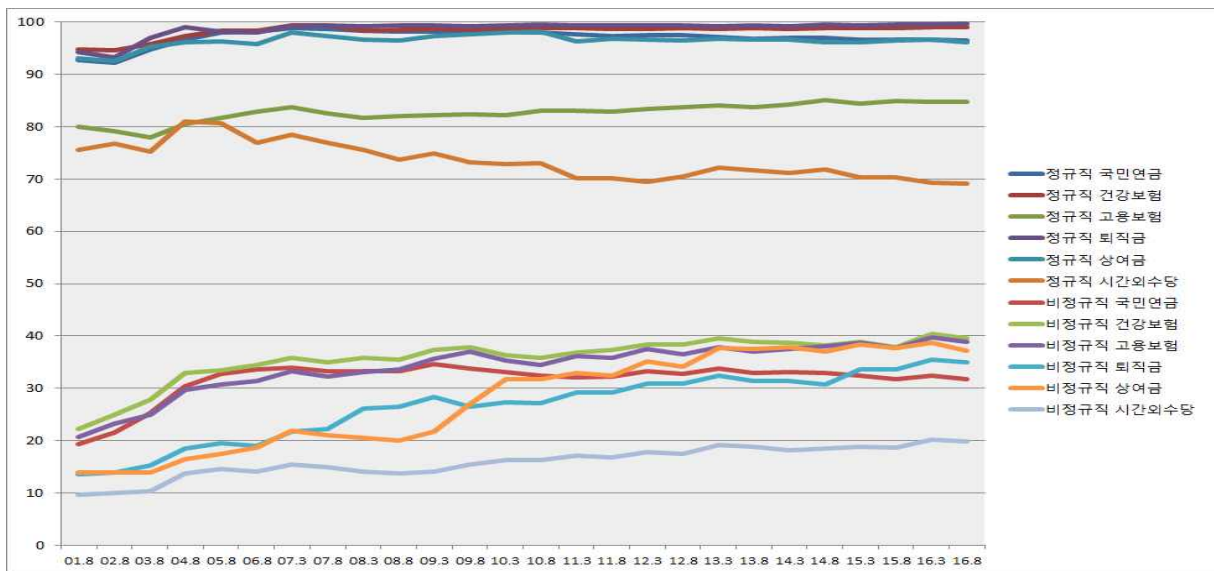
[표18] 고용형태별 사회보험 및 노동조건 적용률 (2016년 8월, 단위: %)

	국민연금 (직장)	건강보험 (직장)	고용보험	퇴직금	상여금	시간외 수당	유급휴가	교육훈련 경험
임금노동자	67.6	72.6	64.3	70.9	69.9	47.3	60.2	57.0
<b>정규직</b>	<b>96.4</b>	<b>99.1</b>	<b>84.7</b>	<b>99.6</b>	<b>96.1</b>	<b>69.2</b>	<b>88.8</b>	<b>71.4</b>
<b>비정규직</b>	<b>31.7</b>	<b>39.6</b>	<b>38.9</b>	<b>35.1</b>	<b>37.3</b>	<b>20.0</b>	<b>24.6</b>	<b>39.0</b>
임시근로	29.7	37.3	36.8	32.6	35.4	18.6	22.7	38.2
장기임시근로	15.2	19.3	22.5	15.3	25.9	8.9	6.4	25.9
한시근로	48.7	60.8	55.5	55.1	47.8	31.2	44.0	54.2
(기간제근로)	55.3	69.0	62.4	62.8	53.0	35.4	51.2	60.8
시간제근로	15.3	19.3	20.8	16.6	18.2	11.1	9.2	34.7
호출근로	0.3	0.3	5.0	0.2	3.1	4.5	0.3	9.5
특수고용	2.3	2.3	4.0	1.6	14.6	0.1	1.0	74.4
파견용역	47.2	78.7	65.1	74.4	59.0	34.9	50.6	48.6
(파견)	64.9	76.4	75.1	73.8	61.7	46.1	58.8	65.1
(용역)	42.1	79.3	62.2	74.6	58.2	31.7	48.3	43.8
가내근로	9.3	9.3	7.4	7.8	16.1	5.0	5.8	15.3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정규직은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률과 퇴직금·상여금 적용률이 100%에 근접하고, 고용보험 가입률은 85%, 시간외수당 적용률은 69%, 유급휴가 적용률은 89%로 거의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비정규직은 사회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가입률이 2001년 19~22%에서 2016년 32~40%로 증가했고, 퇴직금·상여금·시간외수당·유급휴가 적용률은 10~14%에서 20~37%로 증가했다. 하지만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가입률과 노동조건 적용률은 정체 상태에 빠져 있다. 이는 비정규직 대다수가 임시근로 내지 임시근로를 겸하고 있어, 사업체 소속 상용직을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사회보험제도와 근로기준법 체계로는 근본적 제약이 따르기 때문이다([그림17]과 [표19] 참조).

[그림17] 비정규직 사회보험 및 노동조건 적용률 추이 (단위: %)



[표19] 연도별 고용형태별 사회보험 및 노동조건 적용률 (단위: %)

	정규직							비정규직						
	13년 8월	14년 3월	14년 8월	15년 3월	15년 8월	16년 3월	16년 8월	13년 8월	14년 3월	14년 8월	15년 3월	15년 8월	16년 3월	16년 8월
국민연금	96.8	97.0	97.0	96.6	96.6	96.6	96.4	33.0	33.1	32.9	32.4	32.4	32.4	31.7
건강보험	98.8	98.6	98.9	98.8	98.9	99.1	99.1	38.9	38.7	38.3	38.9	38.9	40.4	39.6
고용보험	83.8	84.3	85.1	84.4	84.8	84.7	84.7	37.1	37.5	38.0	38.7	38.7	39.7	38.9
퇴직금	99.3	99.2	99.5	99.4	99.5	99.5	99.6	31.4	31.4	30.7	33.6	33.6	35.5	35.1
상여금	96.6	96.7	96.2	96.2	96.4	96.6	96.1	37.5	37.9	37.1	38.5	38.5	38.7	37.3
시간외수당	71.7	71.2	71.8	70.2	70.4	69.2	69.2	18.9	18.2	18.6	18.8	18.8	20.3	20.0
유급휴가	89.3	89.6	90.0	89.5	89.2	89.1	88.8	25.4	24.2	24.4	24.8	24.8	25.9	24.6
교육훈련경험	61.3	63.1	66.9	67.8	67.6	68.9	71.4	29.9	31.3	35.1	35.4	35.4	37.3	39.0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직장가입 이외에 지역가입이 가능하고, 건강보험은 의료보호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적용받을 수 있다. 이러한 측면까지 고려해서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가입률을 계산하면, 건강보험은 직장가입(39.6%), 지역가입(28.9%),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26.8%), 의료수급권자(1.6%) 등 97.0%가 적용받고 있다. 이에 비해 국민연금은 직장가입(31.7%)과 지역가입(14.4%)을 합쳐도 가입률이 46.1%밖에 안 된다.

공무원과 교원은 고용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규직 가운데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아닌 사람은 13.1%고 고용보험 가입 대상임에도 가입하지 않은 사람이 2.2%다. 이에 비해 비정규직은 고용보험 미가입자가 60.2%에 이른다([표20] 참조).

[표20] 고용형태별 사회보험 적용률 (2016년 8월, 단위: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미가입	직장 가입자	지역 가입자	미가입	직장 가입자	지역 가입자	의료수급권자	직장가입피부양자	미가입	가입	비대상
임금노동자	25.7	67.6	6.7	1.4	72.6	13.2	0.7	12.1	28.1	64.3	7.6
정규직	3.1	96.4	0.5	0.0	99.1	0.6	0.0	0.3	2.2	84.7	13.1
비정규직	53.9	31.7	14.4	3.0	39.6	28.9	1.6	26.8	60.2	38.9	0.8
임시근로	55.4	29.7	14.9	3.2	37.3	30.0	1.7	27.8	62.4	36.8	0.8
장기임시근로	63.8	15.2	21.0	3.7	19.3	41.7	1.9	33.4	77.5	22.5	0.0
한시근로	44.4	48.7	6.8	2.5	60.8	14.8	1.4	20.5	42.6	55.5	1.8
(기간제근로)	39.1	55.3	5.6	1.5	69.0	11.4	1.4	16.6	35.5	62.4	2.2
시간제근로	73.4	15.3	11.3	3.6	19.3	29.3	2.9	44.9	78.6	20.8	0.6
호출근로	74.6	0.3	25.0	6.8	0.3	53.3	2.4	37.1	95.0	5.0	0.0
특수고용	54.3	2.2	43.5	0.4	2.2	62.3	1.0	34.0	96.0	4.0	0.0
파견용역	47.3	47.2	5.5	1.4	78.6	8.7	0.8	10.5	34.8	65.1	0.1
(파견)	29.4	64.7	6.0	1.5	76.5	8.0	1.5	12.5	24.4	75.1	0.5
(용역)	52.5	42.2	5.3	1.3	79.3	8.9	0.6	9.9	37.8	62.2	0.0
가내근로	69.0	9.5	21.4	4.8	9.5	28.6	2.4	54.8	92.7	7.3	0.0

9. 근속년수

2016년 8월 임금노동자 근속년수 평균은 5.8년으로 1년 전보다 0.1년 길어졌다. 정규직은 8.4년에서 8.5년으로 0.1년 길어졌고, 비정규직은 2.4년에서 2.4년으로 변함이 없다. 근속년수 1년 미만의 단기근속자가 정규직은 14.8%인데 비정규직은 54.6%다. 이는 그만큼 비정규직의 고용불안이 심함을 말해준다([표21] 참조).

[표21] 근속년수 평균값과 계층별 분포 (2016년 8월, 단위: %)

	근속년수		분포(%)					
	평균값	중위값	1년 미만	1~2년 미만	2~3년 미만	3~5년 미만	5~10년 미만	10년 이상
임금노동자	5.8	2.4	32.5	13.2	8.3	10.6	14.4	21.0
정규직	8.5	5.4	14.8	11.3	8.7	12.8	19.1	33.3
비정규직	2.4	0.8	54.6	15.6	7.8	7.9	8.4	5.7
임시근로	2.3	0.7	55.8	15.6	7.6	7.5	8.1	5.4
장기임시근로	2.2	0.6	58.0	15.5	6.9	6.6	7.5	5.5
한시근로	2.4	0.8	52.9	15.7	8.6	8.8	8.8	5.2
(기간제근로)	2.4	0.9	51.1	15.7	9.4	9.4	9.3	5.1
시간제근로	1.7	0.4	66.0	13.5	6.5	5.3	5.5	3.2
호출근로	0.1	0.0	99.1	.5	.2	.1	0	.1
특수고용	5.8	2.6	27.7	14.8	9.7	10.5	15.6	21.7
파견용역	2.9	1.4	41.6	18.1	10.1	11.6	12.8	5.8
(파견)	2.9	1.2	44.8	17.4	8.0	12.9	10.9	6.0
(용역)	2.8	1.5	40.7	18.2	10.8	11.2	13.4	5.7
가내근로	1.4	0.3	65.9	12.2	7.3	7.3	4.9	2.4

10. 취업 동기

현재 일자리 형태에 비자발적 취업은 정규직이 14.9%, 비정규직이 51.9%다. 정규직은 자발적 취업사유를 ‘근로조건 만족’(42.7%), ‘안정된 일자리’(38.7%) 순으로 응답했고, 비정규직은 비자발적 취업사유를 ‘생활비 등 당장 수입이 필요해서’(40.3%)와 ‘원하는 일자리가 없어서’(5.6%) 순으로 응답하고 있다. 고용형태별 비자발적 취업자 비율은 호출근로(82.2%), 장기임시근로(59.3%), 파견용역(55.4%), 특수고용(44.5%), 시간제근로(42.2%), 기간제근로(40.9%) 순이다([표22]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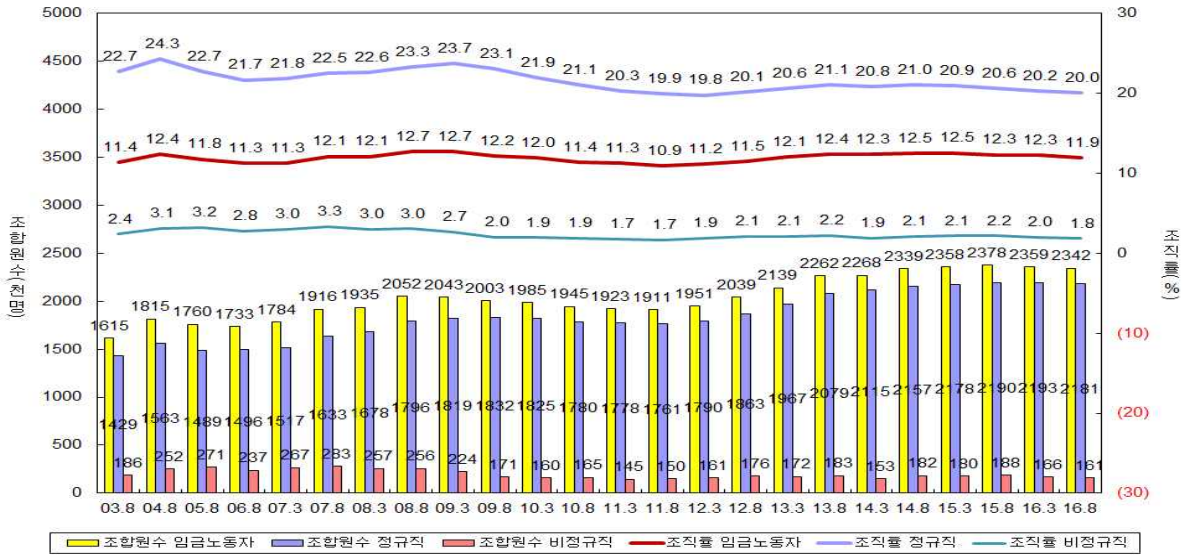
[표22] 고용형태별 취업동기 (2016년 8월, 단위: %)

	자발적 취업여부		자발적 취업 사유			비자발적 취업 사유			
	자발적 취업	비자발적 취업	근로조건 만족	안정된 일자리	기타	생활비등 수입필요	원하는일 자리없어	전공경력맞 는일자리무	기타
임금노동자	68.6	31.4	34.6	24.9	9.2	24.4	3.4	1.3	2.3
정규직	85.1	14.9	42.7	38.7	3.6	11.6	1.6	1.0	0.7
비정규직	48.1	51.9	24.4	7.7	16.0	40.3	5.6	1.7	4.3
임시근로	47.1	52.9	23.8	7.2	16.1	41.1	5.7	1.7	4.4
장기임시근로	40.7	59.3	18.8	3.9	18.0	46.5	6.3	1.7	4.9
한시근로	55.5	44.5	30.3	11.6	13.6	34.1	5.0	1.6	3.8
(기간제근로)	59.1	40.9	34.2	13.0	11.8	31.6	4.5	1.5	3.3
시간제근로	57.8	42.2	24.9	2.4	30.5	29.0	5.4	1.3	6.5
호출근로	17.8	82.2	8.8	0.5	8.6	74.2	4.2	1.4	2.4
특수고용	55.5	44.5	18.6	1.2	35.6	30.6	4.9	1.4	7.7
파견용역	44.6	55.4	26.3	12.0	6.2	47.4	4.6	1.8	1.7
(파견)	54.2	45.8	27.7	15.8	10.7	36.1	5.4	1.0	3.2
(용역)	41.8	58.2	25.9	10.9	5.0	50.6	4.3	2.0	1.2
가내근로	52.4	47.6	14.6	0.0	37.7	39.0	2.4	2.4	3.7

11. 노조 조직률

조합원 수(조직률)는 2008년 8월 205만 명(12.7%)을 정점으로 2011년 8월 191만 명(10.9%)까지 계속 감소했다. 하지만 2012년 3월부터 증가세로 돌아서 2014년 8월에는 234만 명(12.5%)으로 3년만에 43만 명(1.6%p) 증가했고, 2015년 이후는 234~238만 명(12.3~12.5%)으로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16년 8월 현재 조합원 수 234만 명 가운데 정규직은 218만 명(20.0%)이고 비정규직은 16만 명(1.8%)이다([그림18]과 [표23] 참조).

[그림18] 고용형태별 노조 조직률 추이 (단위: %)



[표23] 연도별 고용형태별 노조 조합원 수, 조직률 및 조합원 구성 (2016년 8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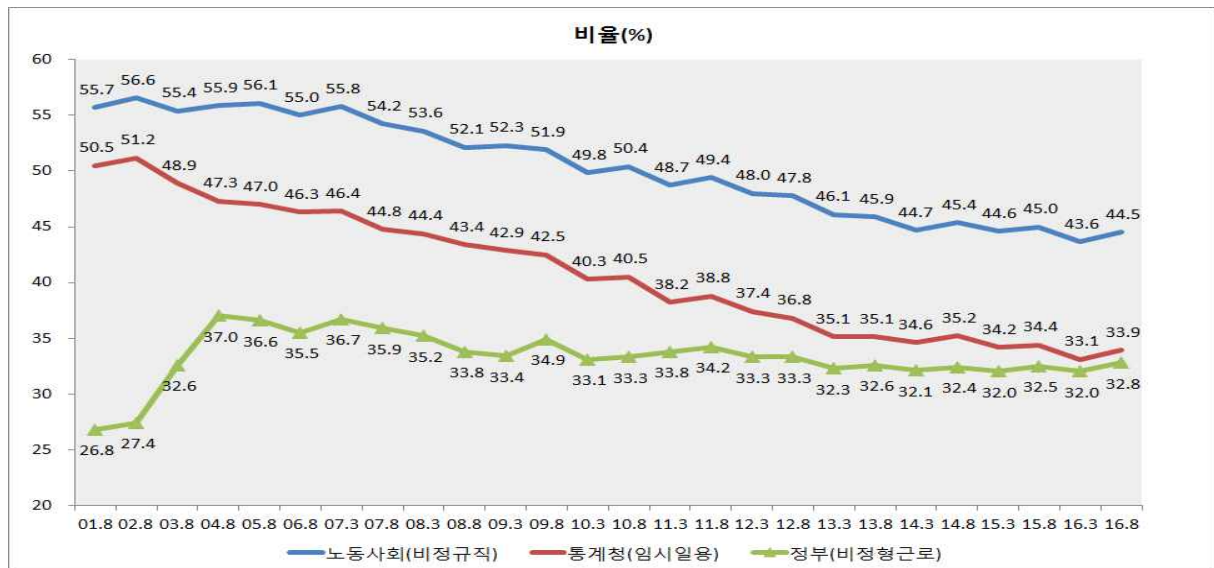
	수(천 명)				비율(%)			
	노조없음	노조유. 가입대상 아님	노조유. 가입대상 미가입	노조가입	노조없음	노조유. 가입대상 아님	노조유. 가입대상. 미가입	노조가입
임금노동자	14,588	1,495	1,203	2,342	74.3	7.6	6.1	11.9
정규직	6,942	696	1,070	2,181	63.8	6.4	9.8	20.0
비정규직	7,646	799	133	161	87.5	9.1	1.5	1.8
임시근로	7,371	780	112	143	87.7	9.3	1.3	1.7
장기임시근로	4,556	167	14	17	95.8	3.5	0.3	0.4
한시근로	2,814	613	98	126	77.1	16.8	2.7	3.5
(기간제근로)	2,156	572	85	117	73.6	19.5	2.9	4.0
시간제근로	2,162	283	24	14	87.1	11.4	1.0	0.6
호출근로	858	5			99.4	0.6		
특수고용	435	59			88.1	11.9		
파견용역	810	50	13	24	90.3	5.6	1.4	2.7
(파견)	161	29	5	6	80.1	14.4	2.5	3.0
(용역)	648	21	8	19	93.1	3.0	1.1	2.7
가내근로	41				100.0			

### [보론] 비정규직 규모 추정 방식

2016년 8월 현재 비정규직 규모를 정부<sup>2)</sup>는 644만 명(32.8%), 노동사회연구소는 874만 명(44.5%)으로 달리 추정하고 있다. 노동사회연구소 추정 방식에 따르면 2001년 8월부터 2007년 3월까지 55~56% 수준을 유지하다가, 2007년 3월(55.8%)부터 2014년 3월(44.7%)까지 7년 동안 11.1%p 감소했고, 2014년 8월(45.4%)부터 2016년 8월(44.5%)까지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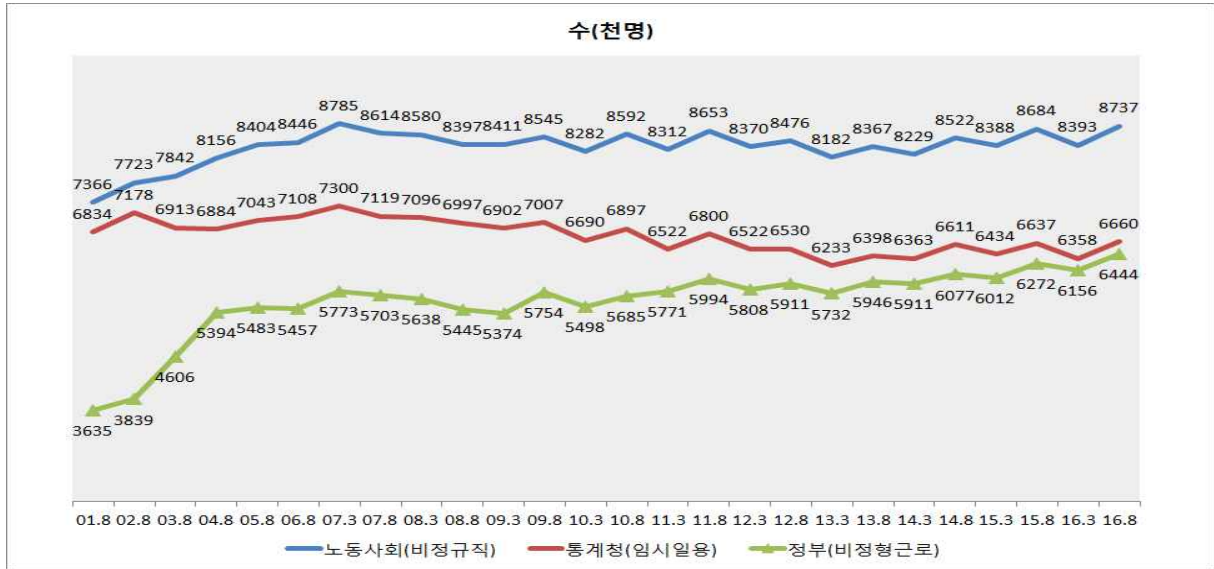
이에 비해 정부 추정방식에 따르면 2002년 8월 27.4%에서 2004년 8월 37.0%로 가파르게 증가한 비정규직 비율이 2007년 3월까지 36~37% 수준을 유지하다가, 2007년 3월(36.7%)부터 2013년 3월(32.3%)까지 6년 동안 4.4%p 감소했다. 2013년 이후는 32%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그림 19] 참조).

[그림19] 비정규직 규모 추이



2) 2005년까지는 노동부가 비정규직 규모를 추정해서 발표했다. 그러나 2005년 비정규직 규모를 추정하는 과정에서 노동부가 실책을 범하면서, 2006년 8월부터 통계청이 비정규직 규모를 발표하고 있다. 그렇지만 통계청은 노동부 추정방식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 최종 발표기관이 달라진 것을 제외하면 양자 간 차이는 없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편의상 노동부 또는 통계청을 정부로 통일하여 사용한다. 그리고 혼란을 피하기 위해 정부가 추정하는 비정규직을 ‘비정형근로’로 정의한다.

[그림19] 비정규직 규모 추이(계속)



동일한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자료를 분석했음에도 비정규직 규모가 크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설문 문항 중 어디까지를 비정규직으로 보는가에서 비롯된다. 정부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에서 7개 설문 문항(한시근로, 시간제근로, 파견근로, 용역근로, 가내근로, 호출근로, 특수고용형태) 중 어느 하나에 응답한 사람만 비정규직으로 추계한다([표24]에서 ②+③). 그동안 통계청이 발표해 온 임시일용직 가운데 238만 명(①)이 실체는 정규직인데 비정규직으로 잘못 분류되었다는 것이다.<sup>3)</sup>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임시·일용직은 일제 때부터 형성된 개념으로, 통계청은 1963년부터 상용·임시·일용직을 구분해서 조사 및 발표해 왔다. 비정규직, 시간제근로, 파견근로, 용역근로 등의 용어가 등장하기 전인 1970~80년대에도, 많은 단체협약이 임시직 조항을 체결한 데서 알 수 있듯이, 노동현장에서 임시·일용직은 불안정고용(비정규직)을 지칭하는 대명사로 통용되어 왔다. 이에 따라 노동사회연구소는 임시일용직 666만 명(33.9%)에, 부가조사에서 확인된 상용직 가운데 비정규직 208만 명(10.6%)을 합쳐 874만 명(44.5%)으로 추계했다([표24]에서 ①+②+③).<sup>4)</sup>

3) 노동부와 통계청은 이러한 분류 방식이 “노사정위원회가 합의(2002년 7월)한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의 및 범주에 따른 것”이라고 강변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자세한 것은 2007년 4월 16일자 매일노동뉴스 보도 참조바람).

4) 정부는 한시근로자를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계약근로자’와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았으나 비자발적 사유로 계속근무를 기대할 수 없는 자’로 정의한다. 하지만 노동사회연구소는 비정규직 고용형태를 주관적 평가가 게재되기 마련인 ‘비자발적 사유’를 기준으로 정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판단 아래, 한시근로자를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기간제 근로자’와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았으나 계속근무를 기대할 수 없는 자’로 정의한다.



[표24] 비정규직 규모 추계 방식 (2016년 8월, 단위: 천 명, %)

			본 조사		소계
			상용	임시일용	
부 가 조 사	설문문항 없음	(정형)	④ 10,889(55.5)	① 2,377(12.1)	①+④ 13,266(67.6)
	한시, 시간제, 파견, 용역, 가내, 호출근로, 특수고용형태	(비정형)	③ 2,077(10.6)	② 4,284(21.8)	②+③ 6,361(32.4)
소계			③+④ 12,966(66.1)	①+② 6,661(33.9)	19,626(100.0)

주: 노동사회연구소 비정규직=①+②+③, 노동부 등 비정형근로=②+③, 통계청 임시일용=①+②

비정규직 규모와 관련된 논란의 핵심인 임시일용직 가운데 238만 명, 즉, ‘정형-임시일용’(①)의 구성과 노동조건을 살펴보면, 저임금계층이 114만 명이고, 법정 최저임금 미달자가 68만 명이다. 시간당 임금은 7,892원으로 가장 낮고, 주당 노동시간은 47.3시간으로 가장 길다. 기혼여자(38.4%)와 중졸 이하(20.2%) 비중이 높고, 사회보험 적용률은 24~34%, 시간외수당 등 노동조건 적용률은 11~39%로 매우 낮다. 지난 1년간 교육훈련 경험도 23.3%로 가장 낮다([표25] 참조).

[표25] 노동자 구성 및 노동조건 비교

	2015년8월				2016년3월				2016년8월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노동자 수 (천 명)	2,457	4,180	2,047	10,627	2,346	4,012	2,035	10,840	2,377	4,284	2,077	10,889
(%)	12.7	21.6	10.6	55.0	12.2	20.9	10.6	56.4	12.1	21.8	10.6	55.5
저임금계층 (천 명)	1,257	2,268	504	700	1,209	2,093	499	721	1,137	2,197	448	651
최저임금미만(천 명)	622	1,278	173	149	738	1,457	212	231	678	1,558	201	227
월 평균임금 (만 원)	157	115	204	297	159	119	205	311	159	117	209	306
시간당 임금 (원)	7,739	8,223	11,645	16,207	7,896	8,723	12,020	16,985	7,892	8,657	12,289	16,795
주노동시간 (시간)	47.6	32.6	42.5	43.1	47.7	32.3	42.1	43.1	47.3	31.8	41.8	43.0
근속년수 (년)	2.6	1.5	3.8	8.4	2.5	1.6	3.8	8.4	2.4	1.6	3.9	8.5
기혼여자비율 (%)	40.6	43.1	36.5	22.0	39.6	45.6	38.3	21.8	38.4	44.1	37.5	22.4
중졸이하비율 (%)	20.8	28.6	16.0	4.6	20.6	28.1	15.8	4.5	20.2	28.7	14.8	4.5
국민연금적용 (%)	23.4	12.2	81.5	96.6	25.1	13.2	78.8	96.6	24.4	12.5	79.8	96.4
건강보험적용 (%)	27.3	15.5	96.6	98.9	30.5	17.9	96.1	99.1	29.9	17.2	96.8	99.1
고용보험적용 (%)	30.6	17.6	87.3	84.8	33.6	20.3	84.9	84.7	34.2	18.9	85.6	84.7
퇴직금적용 (%)	20.6	9.9	97.6	99.5	23.0	11.3	97.6	99.5	24.4	10.5	98.0	99.6
상여금적용 (%)	38.0	16.1	81.8	96.4	39.5	16.8	81.1	96.6	39.2	15.3	80.3	96.1
시간외수당적용 (%)	8.9	8.7	51.1	70.4	11.4	9.3	52.1	69.2	10.9	9.6	51.8	69.2
유급휴가 (%)	10.9	8.1	75.9	89.2	12.1	8.3	76.7	89.1	10.5	7.4	76.4	88.8
교육훈련경험 (%)	19.6	32.2	61.5	67.6	20.8	34.1	62.7	68.9	23.3	34.9	65.6	71.4
노조조직률 (%)	1.1	0.4	7.1	20.6	0.5	0.4	6.7	20.2	0.6	0.4	6.3	20.0